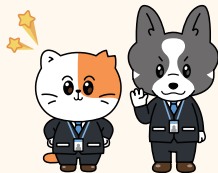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11-B552583-00001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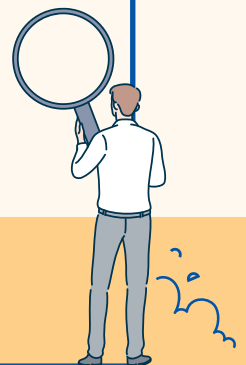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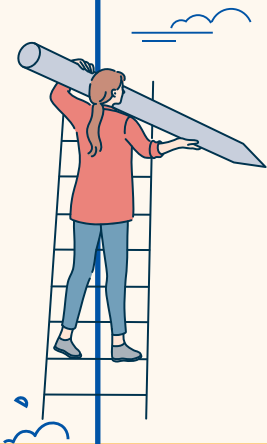
편의시설 자가진단은

각 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스스로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자가진단 문항을 잘 읽으시고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실측 및 전문가의 점검에 의한 결과가 아니므로, 좀 더 정확한 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평가와 점검을 통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더 편한일터
편의시설 자가진단지

CONTENTS

개요	01
용어해설	02
도움말	04
대상시설	05
매개시설 자가진단지	09
내부시설 자가진단지	21
위생시설 자가진단지	39
안내시설 자가진단지	59
그 밖의 시설 자가진단지	67



편의시설 자가진단

사업주, 건축설계자, 건물시공자가 자기 스스로 해당건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간편한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편의시설 자가진단이란

의무시설 설치 범위와 해당 건물에 대한 간편한 자체 진단을 하고, 스스로가 편의시설의 수준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입니다.

〈 자가진단 주요특징 〉

- 공단전문가 및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개발된 신뢰성 있는 검사입니다.
- 별도의 비용부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진단 후 즉시 해당건물의 편의시설 실태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의 이해

- 법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97.04.10.제정, 98.04.11.시행)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98.02.24.제정, 98.04.11.시행)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98.04.11.제정·시행)
- 편의시설 [관련법률 : 「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정의)]
 - 편의시설 : 장애인등의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따라서 결국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복지시설 등 장애인 관련 시설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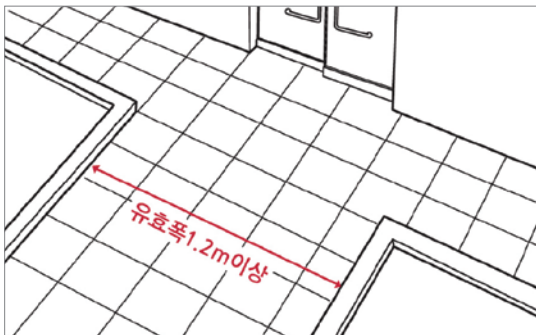
진단사항

- 진단대상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공동주택
- 설치편의시설 :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내부시설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탈의실) 안내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그 밖의 시설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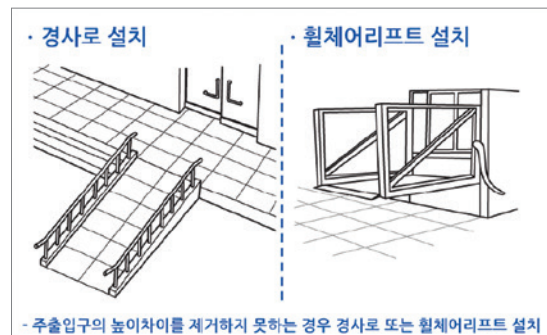
법률 용어 해설

- 장애인등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 편의시설 :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 시설주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 시설주관기관 :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 공동주택 : 건축물의 벽 · 복도 ·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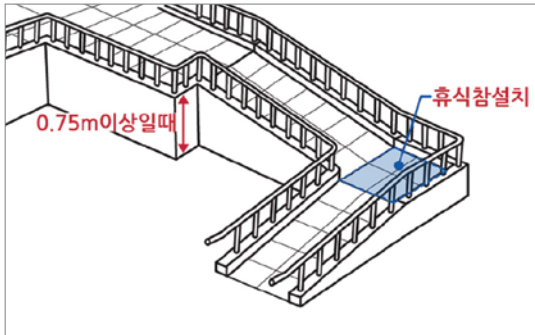
건축 용어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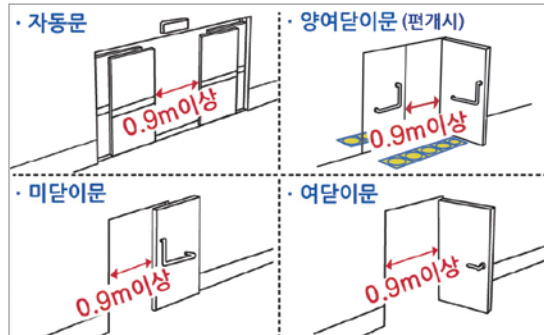
- 유효폭 : 법률이 의도한 본래의 효과가 있는 너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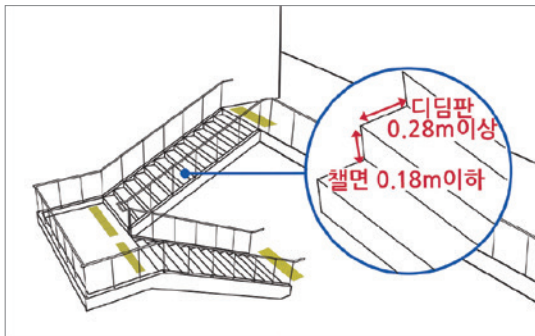
- 경사로 : 종단 방향으로 경사를 갖는 통로 또는 도로
- 휠체어리프트 : 짧은 거리의 수직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승강장치



- 참 : 계단이나 경사로의 중간에 있는 조금 넓은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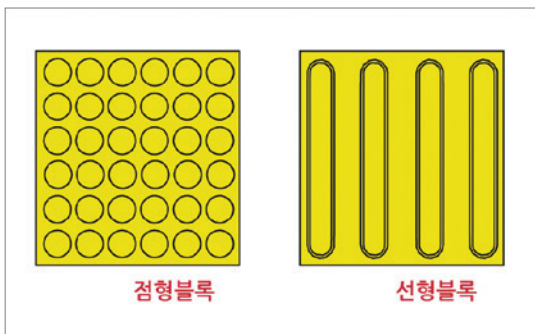
- 자동문 : 옆으로 밀어서 열고 닫게 되어 있는 문
- 여닫이문 : 밀거나 당겨서 열고 닫는 문



- 디딤판 : 계단을 발로 디디게 되어 있는 판
- 챠 면 : 계단 한 단의 수직면
- 계단코 : 아래쪽의 챠판 위로 약간 나와 있는 디딤판의 끝부분



- 트랩 : 배수관의 악취의 역류를 막기 위한 장치



- 점형블록 : 대기지점, 경고, 방향전환지시 등 위치 감지용으로 사용되는 경고블록
- 선형블록 : 목적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보행방향을 지시하는 방향유도형 유도블록



- 촉지도식 안내판 : 주요시설 또는 배치를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 시각 장애인에게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판

대상시설 매뉴얼

[illegible]

편의시설 자가진단 [대상시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전시설			그밖의시설			합계	비고
		장애인구체지원	장애인구체지원	장애인구체지원	장애인구체지원	화장실	화장실	세면대	소변기	사양실	안전시설	안전시설	관람실	관람실	관람실		
		100	120	140	200	250	270	290	320	340	360	380	400	420	440	810	830

- 자가진단 대상시설을 용도 분류하여 나타냅니다.
- 대상시설별 의무설치 및 권장설치 편의시설을 나타냅니다.
- 편의시설별로 각 쪽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의시설 매뉴얼

매개변수 Parameter	내부식설 Internal	외생식설 Exogenous	외생식설 Exogenous	외생식설 Exogenous	그 밖의 식설 Others
매개식설 1. $Q_t = Q_t^e + \epsilon_t$ 2. $Q_t = Q_t^e + \epsilon_t + \eta_t$ 3. $Q_t = Q_t^e + \epsilon_t + \eta_t + \theta_t$	내부식설 1. $Q_t = Q_t^e + \epsilon_t$ 2. $Q_t = Q_t^e + \epsilon_t + \eta_t$ 3. $Q_t = Q_t^e + \epsilon_t + \eta_t + \theta_t$	외생식설 1. $Q_t = Q_t^e + \epsilon_t$ 2. $Q_t = Q_t^e + \epsilon_t + \eta_t$ 3. $Q_t = Q_t^e + \epsilon_t + \eta_t + \theta_t$	외생식설 1. $Q_t = Q_t^e + \epsilon_t$ 2. $Q_t = Q_t^e + \epsilon_t + \eta_t$ 3. $Q_t = Q_t^e + \epsilon_t + \eta_t + \theta_t$	외생식설 1. $Q_t = Q_t^e + \epsilon_t$ 2. $Q_t = Q_t^e + \epsilon_t + \eta_t$ 3. $Q_t = Q_t^e + \epsilon_t + \eta_t + \theta_t$	그 밖의 식설 1. $Q_t = Q_t^e + \epsilon_t$ 2. $Q_t = Q_t^e + \epsilon_t + \eta_t$ 3. $Q_t = Q_t^e + \epsilon_t + \eta_t + \theta_t$ 4. $Q_t = Q_t^e + \epsilon_t + \eta_t + \theta_t + \phi_t$ 5. $Q_t = Q_t^e + \epsilon_t + \eta_t + \theta_t + \phi_t + \psi_t$

- 대상시설별로 간지 색상을 다르게 하여 구분되어 있습니다.
 - 해당 편의시설은 각 간지에서 쪽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시) “공장”의 의무설치 편의시설 중 접근로, 주차구역, 주출입구의 해당 쪽번호를 간지에서 확인합니다.

자가진단지

[illegible]

설 계 단 위	설계내용	시공방법		
		설비	시공	시공량
1-1. 세면기 및 세면기대(세면기대 1.5m×0.5m, 세면기 1.5m×0.5m) (2005. 12. 26. 기준)		세면기 1.5m×0.5m 세면기 1.5m×0.5m	시공 1.5m×0.5m	시공 1.5m×0.5m
설 계 단 위	설계내용	시공방법		
1-2. 세면기 및 세면기대(세면기대 1.5m×0.5m, 세면기 1.5m×0.5m) (2005. 12. 26. 기준 ~ 2018. 6. 1. 기준)		세면기 1.5m×0.5m 세면기 1.5m×0.5m	시공 1.5m×0.5m	시공 1.5m×0.5m
설 계 단 위	설계내용	시공방법		

- 질문사항을 읽으시고, 적용여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도별로 달라진 수치 및 기준 등에 따라 추가된 항목이 있으니, 참고하여 해당되는 항목에 적용여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시설 자가진단 [대상시설]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주출입구 접근도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 · 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 · 침실	관람석 · 열람석	접수대 · 작업대	매표소 · 판매기 · 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대상시설		10p	13p	16p	22p	25p	27p	44p	50p	52p	53p	56p	60p	64p	66p	68p	79p	81p	82p	85p
제 1 종 근린 생활 시설	슈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대피소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공중화장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500제곱미터 미만만 해당한다)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지역아동센터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제 2 종 근린 생활 시설	일반음식점(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일반음식점(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만 해당한다)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공연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안마시설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장외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독서실, 기원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편의시설 자가진단 [대상시설]

편의시설 <	
---	--

편의시설 자가진단 [대상시설]

편의시설 <	
---	--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 · 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 · 친실	관람석 · 열람석	접수대 · 작업대	매표소 · 판매기 · 음료대	임상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10p	13p	16p	22p	25p	27p	44p	50p	52p	53p	56p	60p	64p	66p	68p	79p	81p	82p	85p
모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관광 휴게 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휴게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장례식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다세대주택	아파트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연립주택 (세대수가 10세대 이상만 해당)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다세대주택 (세대수가 10세대 이상만 해당)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기숙사 (기숙사가 2동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장애인용 침실이 설치된 동에만 적용한다. 다만, 장애인용 침실수는 전체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반 침실의 경우 출입구(문)는 권장사항임)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의무				

매개시설



01. 주출입구접근로 10

0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13

03.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16



편의시설 자가진단 [매개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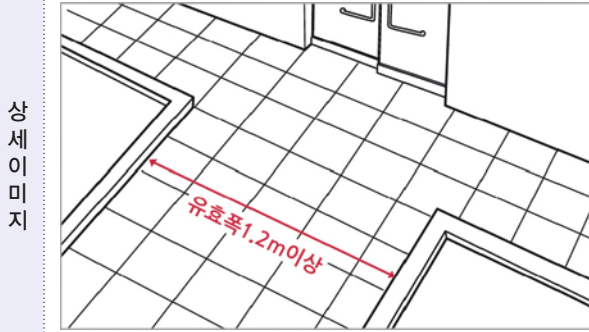
접근로

주차구역

주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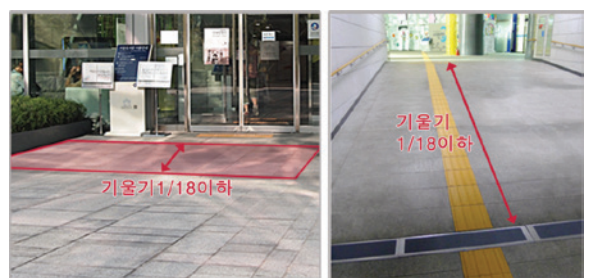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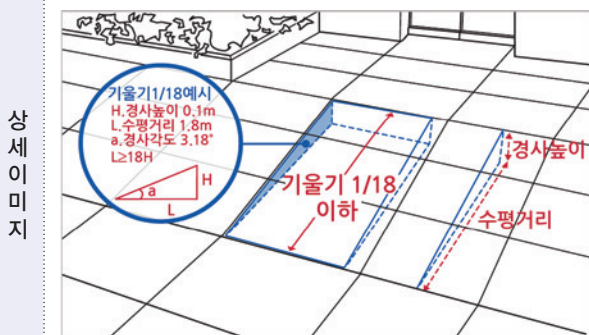
• 주출입구 접근로 (해당시설의 정문에서부터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에 설치된 편의시설)

질문 사항	1. 접근로 보도의 유효폭이 1.2m이상입니까?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1.2m이상	☐ 1.2m이하	☐ 0.9m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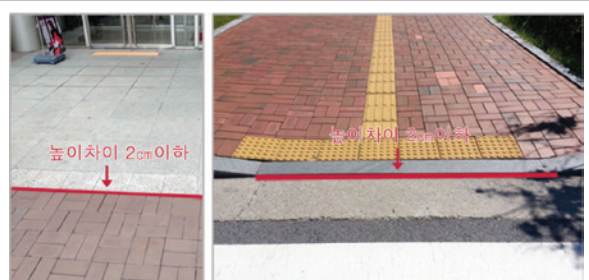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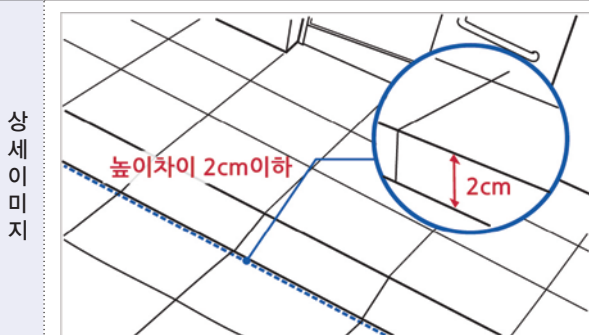
접근로 보도의 유효폭이 1.2m이상인 사례 사진

질문 사항	2. 접근로 보도의 기울기는 1/180이하입니까? [경사도 1/18 : 경사수평거리 ≥ 18 X 경사높이, 각도 3.18°]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1/180이하	☐ 1/18~1/12	☐ 1/12초과



접근로 보도의 기울기가 1/180이하인 사례 사진

질문 사항	3. 접근로에 단차가 있다면, 그 높이차이가 2cm이하입니까? [단차 없으면 2cm이하에 체크]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2cm이하		☐ 2cm초과



접근로의 높이 차이가 2cm인 사례 사진

편의시설 자가진단 [매개시설]

접근로

주차구역

주출입구

• 주출입구 접근로 (해당시설의 정문에서부터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에 설치된 편의시설)

질문 사항	4. 접근로에 보도와 차도의 경계가 되어있습니까? (경계: 보도와 차도가 재질 및 색상으로 구분되어야 함)	적용여부		
		설치 □재질, 색상 구분	미흡 □색상 구분	미설치 □구분 없음
상세 이미지				
		접근로의 보도와 차도가 재질 및 색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례 사진		
질문 사항	5. 접근로 보도의 재질이 미끄럽지 않습니까? (미끄럽지 않은 재질: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	적용여부		
		설치 □미끄럽지 않음 (①, ②, ③)	미흡	미설치 □미끄러움 (④)
상세 이미지				
		접근로 보도에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6. 접근로 보도의 보도블록 등이 틈이 벌어지지 않고 평탄하게 마감되어 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틈이 없음 (①, ②)	미흡	미설치 □틈이 2cm초과 (③, ④)
상세 이미지				
		접근로 보도블록이 틈이 벌어지지 않고 평탄하게 마감된 사례 사진		

편의시설 자가진단 [매개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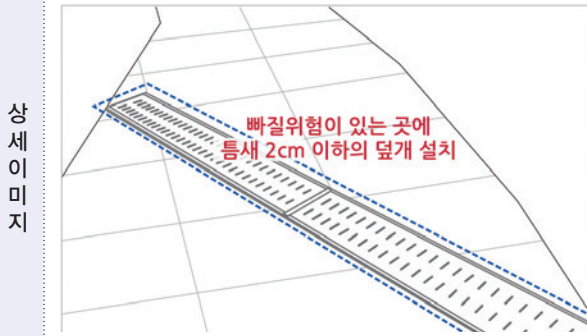
접근로

주차구역

주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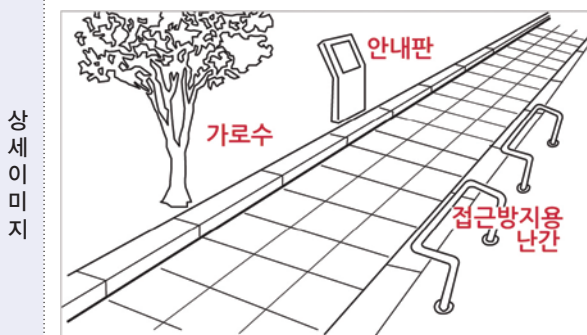
• 주출입구 접근로 (해당시설의 정문에서부터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에 설치된 편의시설)

질문 사항	7. 접근로 보도의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 틈새 2cm이하의 덮개를 단차 없이 설치하였습니까? (덮개 : 물빠짐철재 등)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틈새 2cm이하		☐ 틈새 2cm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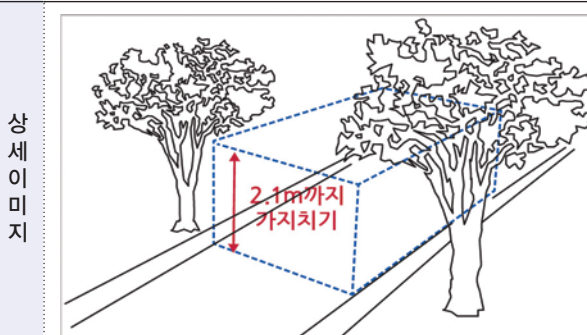
접근로 보도의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 틈새 2cm이하의 덮개를 설치한 사진

질문 사항	8. 장애인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접근로 위의 가로수, 안내판 등이 제거 되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장애물 없음		☐ 장애물 있음



접근로 보도 위에 장애인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는 사례 사진

질문 사항	9. 접근로 주변에 가로수가 있을 경우 높이 2.1m까지 가지치기가 되어있습니까? (가로수가 없으면 되었음으로 체크)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가지치기 되었음		☐ 가지치기 안되었음



접근로 주변의 가로수가 높이 2.1m까지 가지치기 되어 있는 사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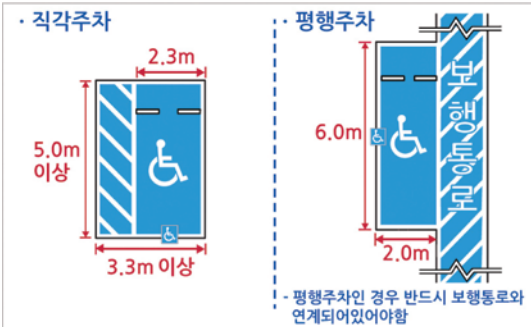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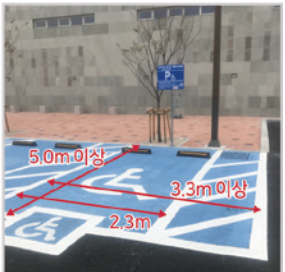
편의시설 자가진단 [매개시설]

접근로

주차구역

주출입구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대상건물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없을 경우 체크항목 모두 미설치 체크)

질문 사항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바로접근	미흡 ☐ 바로접근 안됨	미설치 ☐ 미설치(계단접근)
상세 이미지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한 사례 사진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2. 안전보행통로가 유효폭 1.2m이상으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까지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전보행통로: 차량과 간섭을 피하기 위한 보행로)	적용여부		
		설치 ☐ 1.2m이상 연속설치	미흡 ☐ 1.2m미만 또는 불연속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안전보행통로는 1.5m이상으로 설치를 권장			안전보행통로가 출입구까지 연속적으로 설치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3. 주차구역의 크기는 폭 3.3m이상, 길이 5m이상(평행주차인 경우 폭 2m이상, 길이 6m이상)의 규정에 적합합니까?	적용여부		
		설치 ☐ 규정에 맞음	미흡 ☐ 규정보다 작게 확보 및 미설치	미설치 ☐ 규정보다 작게 확보 및 미설치
상세 이미지	 · 직각주차: 2.3m, 5.0m 이상, 3.3m 이상 · 평행주차: 6.0m, 2.0m, 3.3m 이상 · 평행주차인 경우 반드시 보행통로와 연계되어 있어야 함			규정에 적합한 크기의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한 사례 사진

편의시설 자가진단 [매개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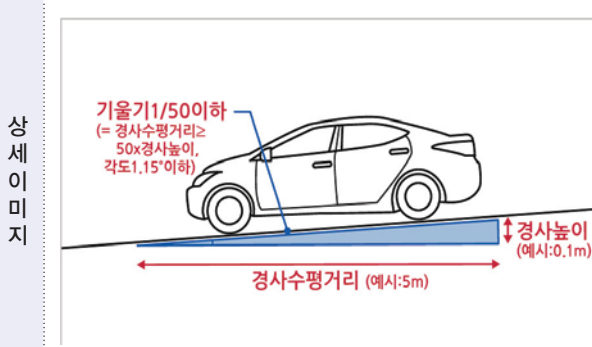
접근로

주차구역

주출입구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대상건물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없을 경우 체크항목 모두 미설치 체크)

질문 사항	4.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들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 차이 없이 설치하였습니까? [기울기 1/50이하 : 경사수평거리 $\geq 50 \times$ 경사높이, 각도 1.15°이하]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주차면에 단차 및 경사 없음		☐ 주차면에 단차 및 경사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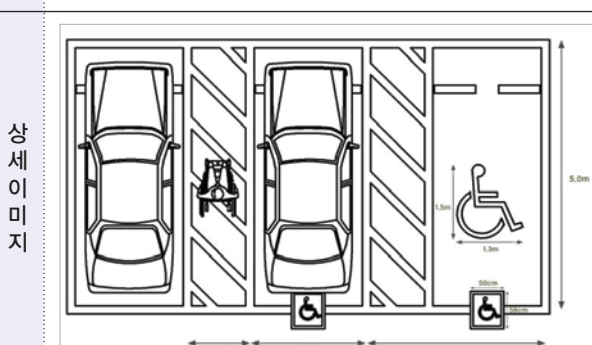
주차바닥면의 경사가 거의 없는(= 기울기 1/50이하 = 각도 1.15° 이하) 사진

질문 사항	5. 주차면이 미끄럽지 않은 재료로 평탄하게 마감되어 있습니까? [휠체어 이동이 어려운 재질 및 마감: 잔디블록, 모래나 자갈 등의 바닥재질]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규정에 맞음	☐ 휠체어의 이동이 어려움	☐ 휠체어의 이동불가



주차면이 미끄럽지 않은 재료로 평탄하게 마감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6. 주차바닥면에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규격에 맞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시를 하였습니까?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1.3m, 세로1.5m]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50cm, 세로58cm]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규정에 맞음	☐ 운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설치	☐ 미설치



주차바닥면에 규격에 맞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를 한 사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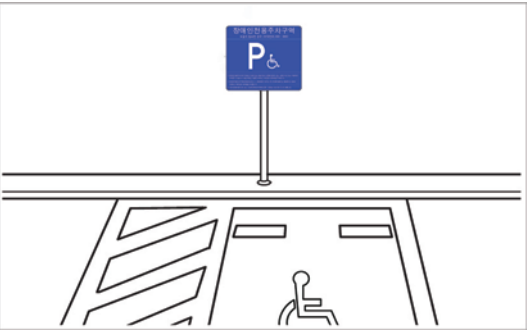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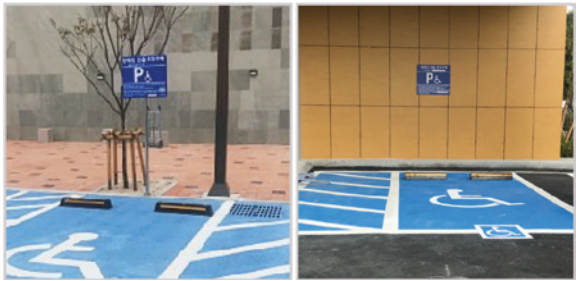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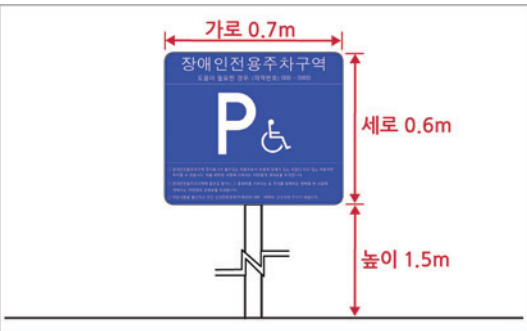
편의시설 자가진단 [매개시설]

접근로

주차구역

주출입구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대상건물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없을 경우 체크항목 모두 미설치 체크)

질문 사항	7. 안내표지판이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규정에 맞춤	미흡 ☐ 운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설치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안내표지판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8. 안내표지판의 규격이 가로 0.7m, 세로 0.6m, 지면에서 표지판 까지 높이가 1.5m의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규정에 맞춤	미흡 ☐ 규정에 미흡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안내표지판을 규정에 맞게 설치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9. 안내표지판의 내용이 규정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규정: 상세이미지 참조)	적용여부		
		설치 ☐ 규정에 맞춤	미흡 ☐ 규정에 미흡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안내표지판을 규정에 맞게 기재한 사례 사진		

편의시설 자가진단 [매개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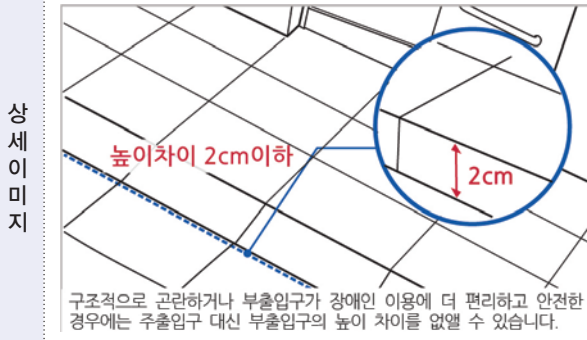
접근로

주차구역

주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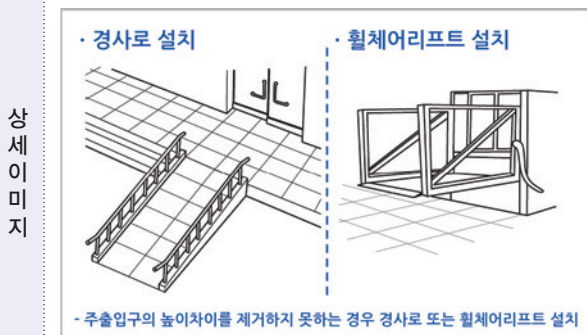
•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건축물 주출입구에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고,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의한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질문 사항	1. 해당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접근로의 높이차이가 2cm이하 입니까? (높이차이가 없으면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항목은 모두 설치로 체크함)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2cm이하		☐ 2cm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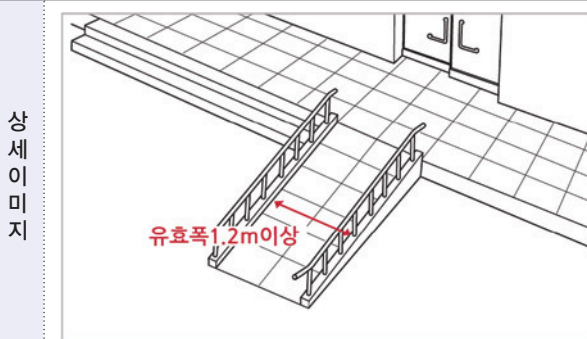
주출입구와 연결접근로의 높이차이가 2cm이하인 사례 사진

질문 사항	2.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 설치		☐ 모두 미설치



주출입구에 경사로 혹은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3. 경사로의 유효폭은 1.2m이상 입니까?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1.2m이상	☐ 1.2m미만	☐ 0.9m이하



경사로의 유효폭이 1.2m이상으로 설치된 사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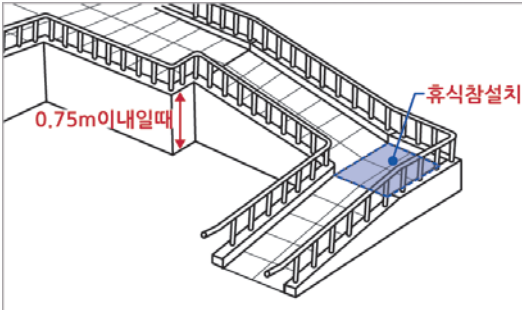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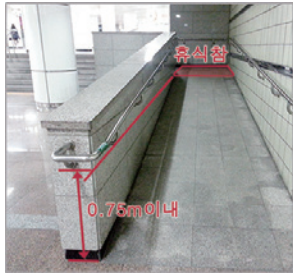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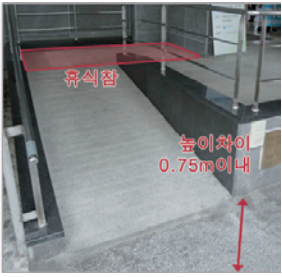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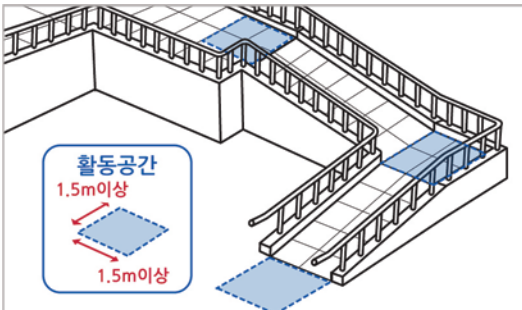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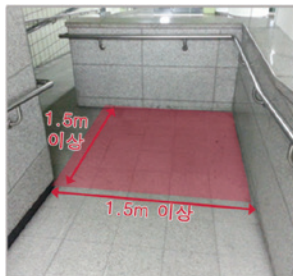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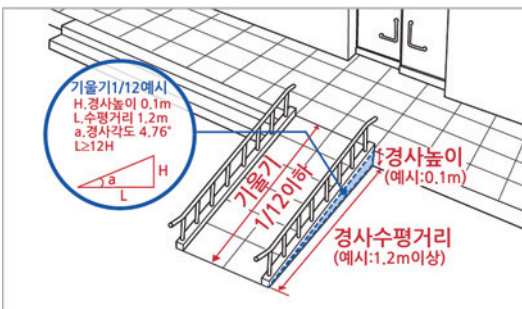
편의시설 자가진단 [매개시설]

접근로

주차구역

주출입구

•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건축물 주출입구에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고,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의한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질문 사항	적용여부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4. 경사로의 휴식참이 0.75m 이내마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높이차이가 0.75m 이하일 경우 설치로 체크]		☐ 휴식참 설치		☐ 휴식참 미설치
상세 이미지		   경사로에 휴식참을 설치한 사례 사진		
5.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휴식참에 1.5mX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였습니까?		☐ 모두 1.5mX1.5m 이상 참 확보	☐ 활동공간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경사로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휴식참에 활동공간을 확보한 사례 사진		
6.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0 이하입니까? [기울기 1/120 이하: 경사수평거리 ≥ 12X 경사높이, 각도 4.76°]		☐ 1/120 이하	☐ 1/12 초과	☐ 1/8 초과
상세 이미지		   기울기가 1/120 이하인 (= 각도 4.76° 이하) 경사로를 설치한 사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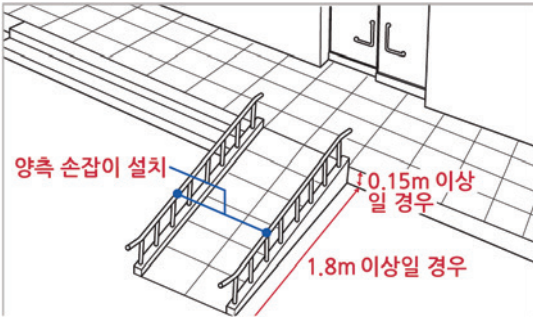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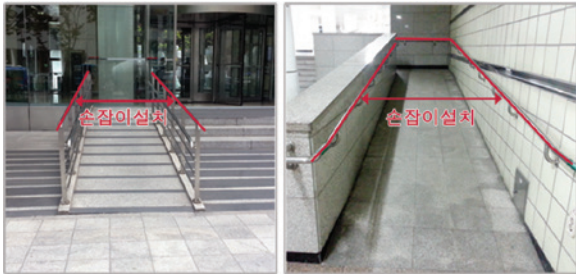
편의시설 자가진단 [매개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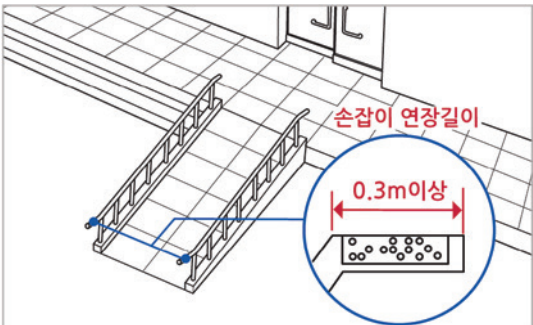
접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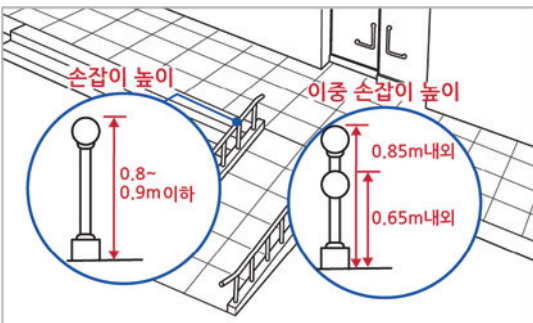
주차구역

주출입구

•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건축물 주출입구에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고,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의한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질문 사항	7. 길이가 1.8m이상이거나 높이가 0.15m이상인 경사로인 경우 양측면에 손잡이를 설치하였습니까? [길이 1.8m미만, 높이 0.15m미만의 경사로일 경우 손잡이 관련 항목 모두 설치로 체크]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양측면 손잡이 설치	☐ 기준 미흡설치	☐ 미설치
상 세 이 미 지		 길이 1.8m이상, 높이 0.15m이상인 경사로 양측면에 손잡이를 설치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8. 손잡이 시작과 끝부분에 0.3m이상 연장하여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기준 적용	☐ 기준 미흡설치	☐ 미설치
상 세 이 미 지		 손잡이 시작과 끝부분에 0.3m이상 연장하여 수평손잡이를 설치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9. 손잡이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이상 0.9m이하에 설치 하였습니까?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쪽 손잡이 0.85m내외, 아랫 쪽 손잡이 0.65m 내외 설치]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기준 적용	☐ 기준 미흡설치	☐ 미설치
상 세 이 미 지		 손잡이 높이를 규정에 맞게 설치한 사례 사진		

편의시설 자가진단 [매개시설]

접근로

주차구역

주출입구

•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건축물 주출입구에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고,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의한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질문 사항	10. 손잡이 지름은 3.2cm 이상 3.8cm 이하이고,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cm 내외로 설치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기준 적용	미흡 ☐ 기준 미흡설치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손잡이 지름을 규정에 맞게 설치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11.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점자표지판 부착	미흡 ☐ 기준 미흡설치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손잡이 양끝부분과 굴절부분에 점자표지판을 부착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12. 경사로의 바닥표면이 미끄럽지 않은 재료로 평탄하게 마감되어 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규정에 맞음 [①, ②, ③]	미흡 ☐ 휠체어의 이동이 어려움	미설치 ☐ 휠체어의 이동불가 [④]
상세 이미지		미끄럽지 않은 재료로 평탄하게 마감한 경사로 바닥 사례 사진		

편의시설 자가진단 [매개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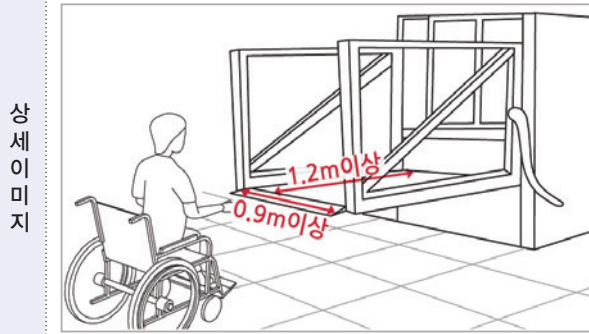
접근로

주차구역

주출입구

-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건축물 주출입구에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고,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의한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질문 사항	13.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0.9m이상, 깊이 1.2m이상 인니까?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0.9mX1.2m이상	☐ 폭 깊이 미흡설치	☐ 미설치



바닥이 폭 0.9m이상, 깊이 1.2m이상인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한 사례 사진

내부시설



01. 출입구(문) 22

02. 복도 25

03. 계단 또는 승강기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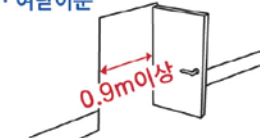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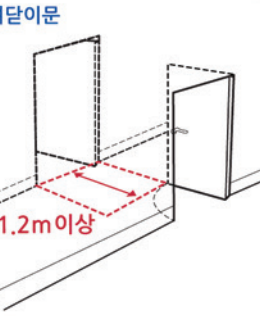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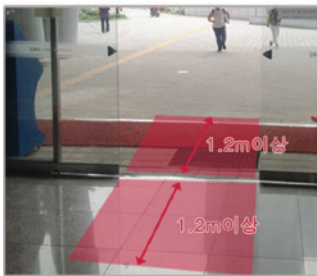
편의시설 자가진단 [내부시설]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출입구 (주출입문과 내부 출입문 모두를 포함한다.)

질문 사항	1-1. 통과 유효폭이 0.8m이상 인니까? (2018. 8. 9. 이전)	적용여부		
		설치 ☐ 0.8m이상	미흡 ☐ 0.8m미만	미설치
상세 이미지	· 자동문  · 양여닫이문 (편개시) 	 		
	· 미닫이문  · 여닫이문 			
		출입구 유효폭이 0.8m이상인 출입구 사례 사진		
질문 사항	1-2. 통과 유효폭이 0.9m이상 인니까? (2018. 8. 10. 이후)	적용여부		
		설치 ☐ 0.9m이상	미흡 ☐ 0.9m미만	미설치
상세 이미지	· 자동문  · 양여닫이문 (편개시) 	 		
	· 미닫이문  · 여닫이문 			
		출입구 유효폭이 0.9m이상인 출입구 사례 사진		
질문 사항	2. 출입문 전 · 후면 유효거리가 1.2m이상입니까?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않음)	적용여부		
		설치 ☐ 1.2m이상	미흡 ☐ 1.2m미만	미설치 ☐ 유효거리 미확보
상세 이미지	자동문  · 여닫이문 	 		
		출입문 전 · 후면에 유효거리 1.2m이상의 공간이 확보된 사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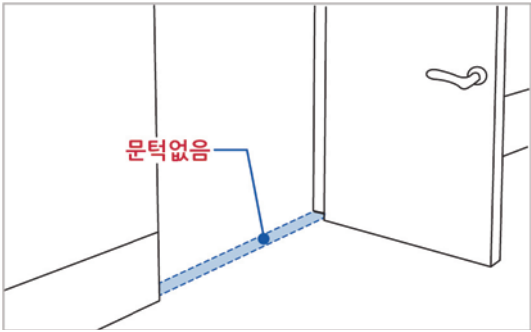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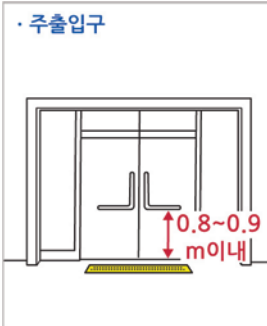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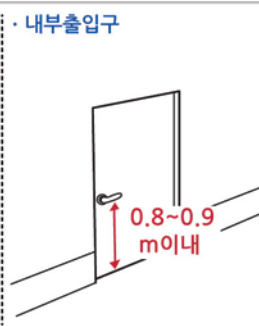
편의시설 자가진단 [내부시설]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출입구 (주출입문과 내부 출입문 모두를 포함한다.)

질문 사항	3. 출입문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없음	미흡	미설치 ☐ 있음
상세 이미지		 바닥에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없는 출입구 사례 사진		
질문 사항	4.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였습니까? (미달이문: 가벼운 재질에 바닥면에 턱이나 문지방, 홈 없이 설치) (여달이문: 도어체크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되도록 설치)	적용여부		
		설치 ☐ 자동문, 미달이문, 여달이문	미흡	미설치 ☐ 회전문
상세 이미지	· 미달이문(설치)  · 여달이문 (설치)  · 자동문 (설치)  · 회전문(미설치) 	 기준에 맞는 여달이문, 자동문 형태의 출입구 사례 사진		
질문 사항	5. 출입문의 손잡이가 0.8m와 0.9m 사이에 위치하여 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0.8m~0.9m사이	미흡 ☐ 기준 초과, 미만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 주출입구  · 내부출입구 	 출입문의 손잡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8와 0.9m 위치에 설치된 사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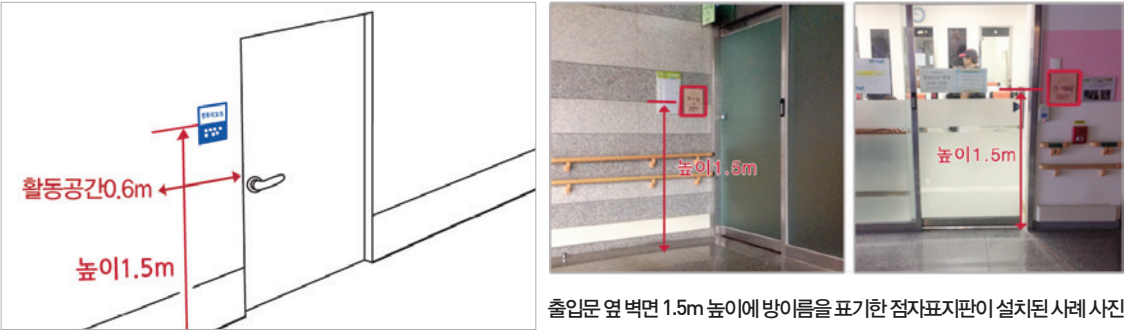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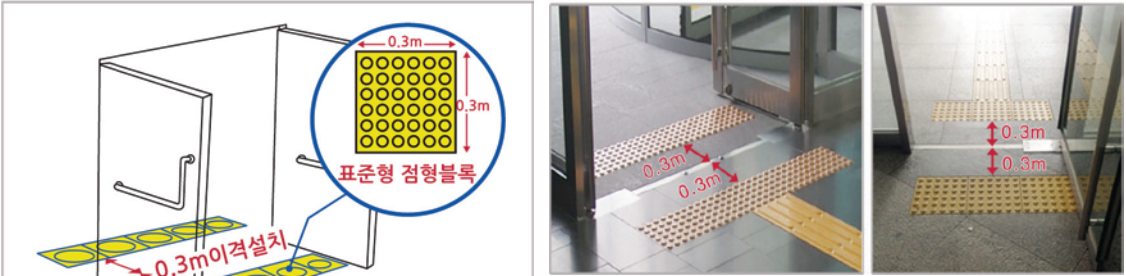
편의시설 자가진단 [내부시설]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한 출입구 (주출입문과 내부 출입문 모두를 포함한다.)

질문 사항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6. 이용빈도가 높은 내부출입문 옆 벽면 1.5m높이에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이 설치되고 활동공간 0.6m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 설치	☐ 미흡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출입문 옆 벽면 1.5m 높이에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이 설치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7. 주출입구 0.3m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하였습니까? (주출입문에 해당)		☐ 표준형 설치	☐ 비표준형 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주출입문 0.3m 전면에 점형블록이 설치된 사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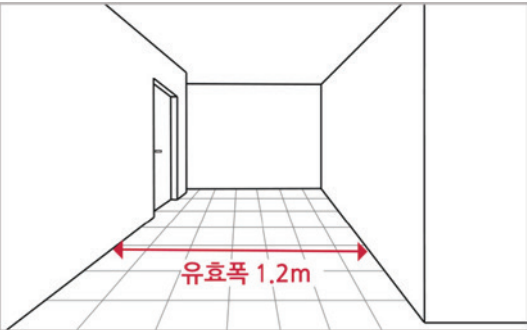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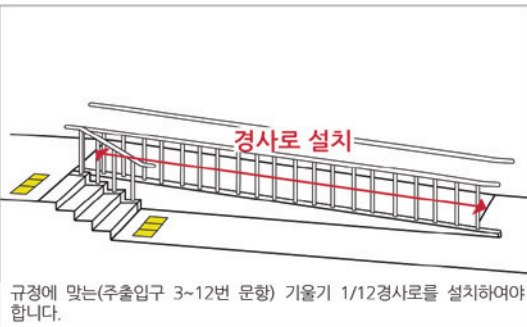
편의시설 자가진단 [내부시설]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질문 사항	1. 복도의 유효폭이 1.2m이상입니까?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1.2m이상	☐ 0.9m이상	☐ 0.9m미만
상세 이미지		 복도 유효폭이 1.2m 이상인 사례 사진		
질문 사항	2. 복도에 높이차이가 없거나, 높이차이가 있을 경우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사로 : 주출입구 3~12번 문향에 맞게 설치]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규정에 맞춤	☐ 규정에 미흡	☐ 미설치
상세 이미지	 규정에 맞는(주출입구 3~12번 문향) 기울기 1/12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복도에 높이차이가 있어 경사로를 설치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3. 복도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되어 있습니까? [미끄럽지 않은 재질 :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미끄럽지 않음 [①, ②]		☐ 미끄러움 [③, ④]
상세 이미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한 복도 바닥 사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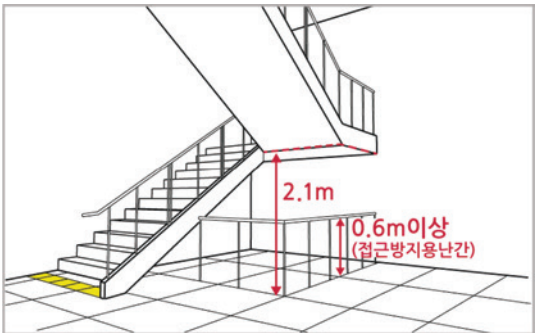
편의시설 자가진단 [내부시설]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출입구 (주출입문과 내부 출입문 모두를 포함한다.)

질문 사항	4. 복도의 유효높이가 2.1m이상입니까? [유효높이: 바닥면으로부터 상부 천장 혹은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까지의 높이]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2.1m이상	☐ 2.1m이내 장애물 있음	☐ 2.1m미만
상세 이미지		 복도 유효높이가 2.1m 이상인 사례 사진		
질문 사항	5. 유효높이가 2.1m이내인 부분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높이 0.6m 이하에 접근방지용 난간이나 보호벽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유효높이 2.1m이상이면 설치에 체크]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규정에 맞춤	☐ 규정에 미흡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유효높이가 2.1m이내인 부분에 접근방지용 난간, 보호벽을 설치된 사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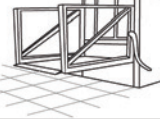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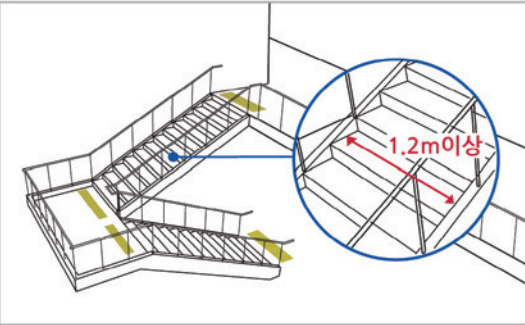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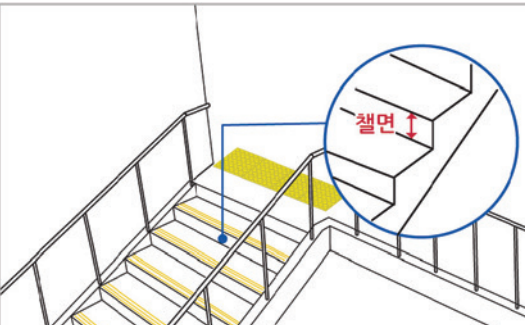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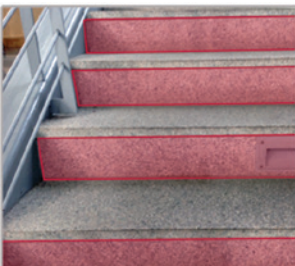
편의시설 자가진단 [내부시설]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등

질문 사항	적용여부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1.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중 하나 이상을 설치하였습니까?	☐ 계단+경사로 ☐ 휠체어리프트	☐ 경사로 ☐ 에스컬레이터	☐ 승강기	☐ 미설치
상세 이미지	· 계단/경사로  · 승강기  · 에스컬레이터  · 휠체어리프트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장애인등이 다른 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사례 사진
2. 계단 유효폭이 1.2m이상입니까?	☐ 1.2m이상	☐ 1.2m미만	☐ 0.9m이상	
상세 이미지		 1.2m이상	 1.2m이상	계단 유효폭을 규정에 맞게 설치한 사례 사진
3. 계단에 철크면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철크면: 계단 한 단의 수직면. 상세이미지 참조)	☐ 철크면 있음	☐ 미흡	☐ 미설치	
상세 이미지				계단의 철크면을 규정에 맞게 설치한 사례 사진

편의시설 자가진단 [내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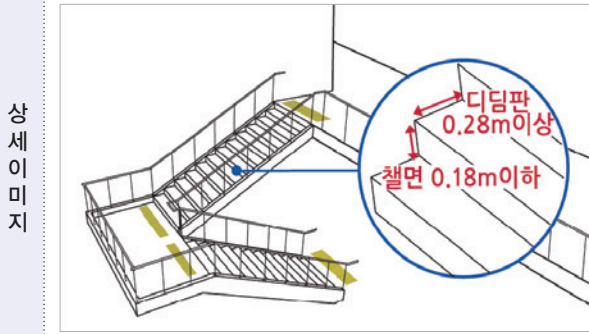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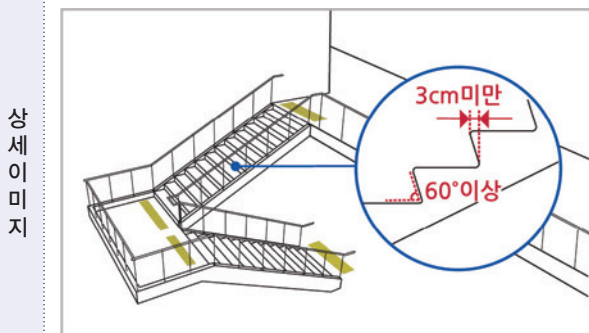
-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등

질문 사항	4. 참을 제외한 계단 전체 디딤판의 너비가 28cm이상, 철크의 높이가 18cm 이하로 균일하게 되어 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규정에 맞음	☐ 규정에 미흡	☐ 2.1m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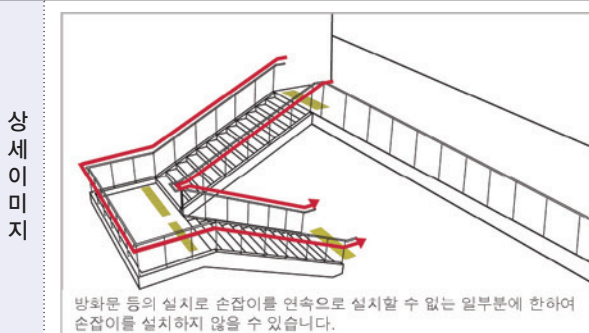
계단의 디딤판과 철크를 규정에 맞게 설치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5. 철크의 기울기가 60도 이상이고, 계단코의 돌출길이가 3cm 미만으로 되어있습니까? [계단코 : 철크보다 조금 더 튀어나온 디딤판의 끝 부분]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규정에 맞음	☐ 규정에 미흡	☐ 미설치



철크의 기울기와 계단코의 돌출길이를 규정에 맞게 설치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6. 계단 측면에 손잡이가 연속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규정에 맞음		☐ 미설치



계단의 측면 손잡이를 연속으로 설치한 사례 사진

편의시설 자가진단 [내부시설]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등

질문 사항	7. 손잡이 시작과 끝부분에 0.3m이상 연장하여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0.3m이상	미흡 ☐ 0.3m미만	미설치 ☐ 0.1m미만
상세 이미지				
	손잡이의 시작과 끝이 연장된 수평손잡이가 설치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8. 손잡이 양끝부분과 굴절부분에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낸 점자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부착	미흡 ☐ 미부착	미설치 ☐ 미부착
상세 이미지				
	손잡이의 양끝과 굴절부분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9. 손잡이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이상 0.9m이하에 설치 하였습니까?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왼쪽 손잡이 0.85m내외, 아래쪽 손잡이 0.65m 내외 설치]	적용여부		
		설치 ☐ 규정에 맞춤	미흡 ☐ 규정에 미흡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손잡이의 높이를 규정에 맞게 설치한 사례 사진			

편의시설 자가진단 [내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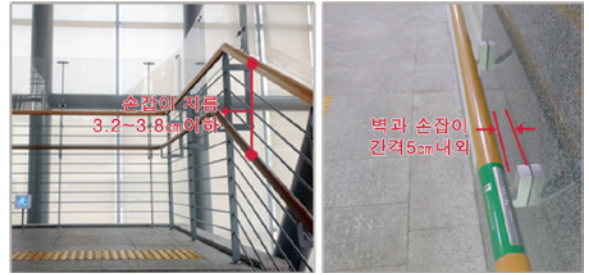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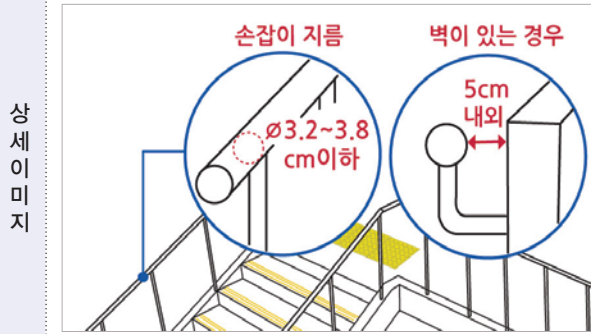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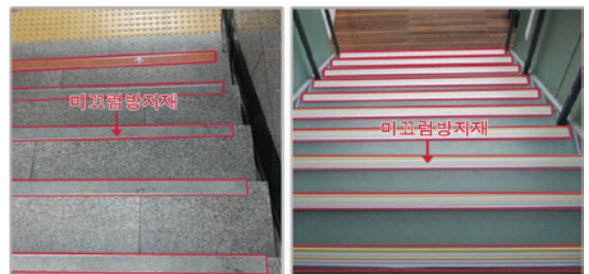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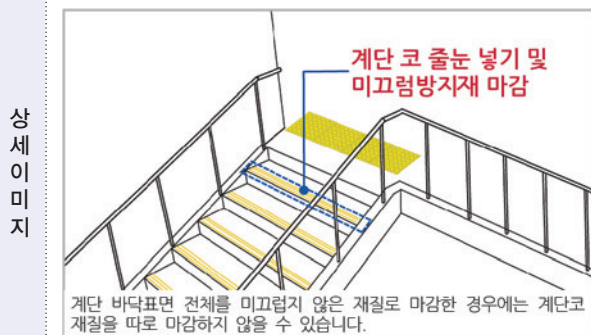
-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등

질문 사항	10. 손잡이 지름은 3.2cm 이상 3.8cm 이하이고,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cm 내외로 설치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규정에 맞춤	☐ 규정에 미흡	☐ 미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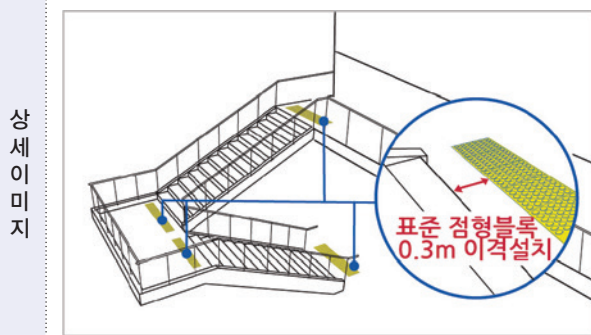
손잡이의 지름을 규정에 맞게 설치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11. 계단코는 줄눈넣기를 하거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하였습니까? (미끄럼방지재: 경질고무류 등)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규정에 맞춤	☐ 규정에 미흡	☐ 미설치



계단의 미끄럼방지 규정에 맞게 설치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12. 계단 시작과 끝지점의 0.3m 전면에 계단폭만큼의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규정에 맞춤	☐ 규정에 미흡	☐ 미설치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에 점형블록을 규정에 맞게 설치한 사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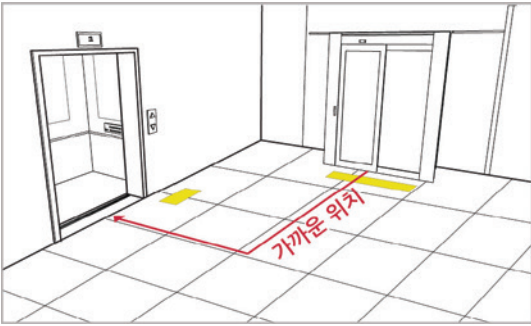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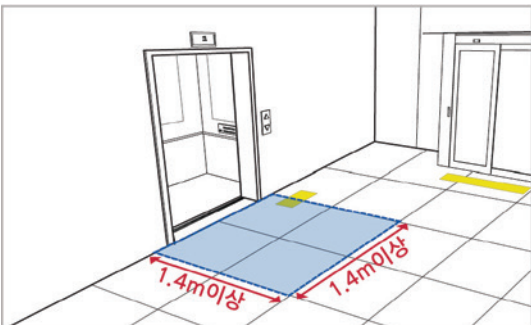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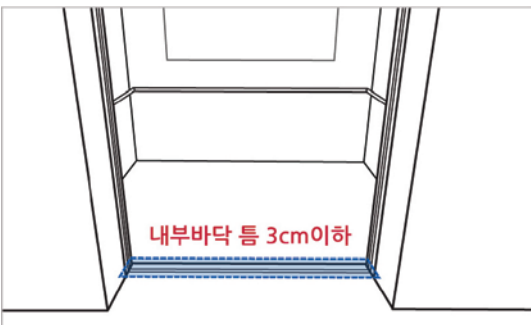
편의시설 자가진단 [내부시설]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등

질문 사항	13. 승강기가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통로(1.2m이상)에 연결되어 있으며,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연속설치	미흡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하고,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승강기를 설치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14. 승강기 전면에 1.4mX1.4m이상의 활동공간이 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1.4mX1.4m이상	미흡 ☐ 1.4mX1.4m미만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승강기 전면에 1.4mX1.4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15. 승강장 바닥과 승강기 내부바닥의 틈이 3cm이하입니까?	적용여부		
		설치 ☐ 3cm이하	미흡	미설치 ☐ 3cm초과
상세 이미지		 승강장 바닥과 승강기 내부바닥 틈이 3cm이하의 사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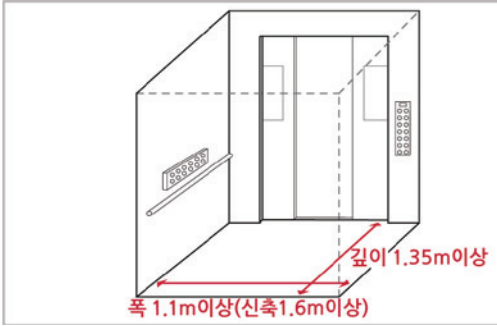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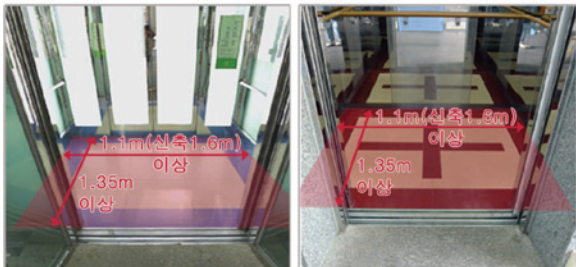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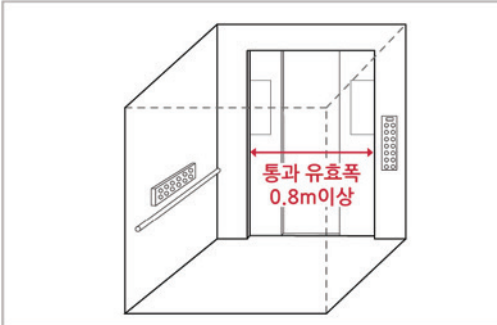
편의시설 자가진단 [내부시설]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등

질문 사항	16. 승강기 내부 유효바닥 면적이 폭 1.6m이상, 깊이 1.35m 이상입니까? (기존건축물의 경우 폭 1.1m이상, 깊이 1.35m이상은 설치에 체크)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폭 1.6m이상, 깊이 1.35m이상	☐ 폭 1.1~1.6m이상, 깊이 1.35m이상	☐ 폭 1.1m미만, 깊이 1.35m미만
상세 이미지		 유효바닥 면적이 폭 1.1m(신축건물 1.6m)이상, 깊이 1.35m이상인 사례 사진		
질문 사항	17. 승강기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이 0.8m이상 인니까? (신축한 건물의 경우, 유효폭을 0.9m로 할 수 있음)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0.8m이상	☐ 0.8m미만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출입문 통과 유효폭이 0.8m이상인 승강기 사례 사진		
질문 사항	18. 승강기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가 0.8m이상, 1.2m이하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0.8m이상, 1.2m이하	☐ 0.8m미만, 1.2m초과	☐ 미설치
상세 이미지	 · 승강기 내부  · 승강장	 승강기 안팎에 모든 스위치 높이가 0.8m이상, 1.2m이하인 사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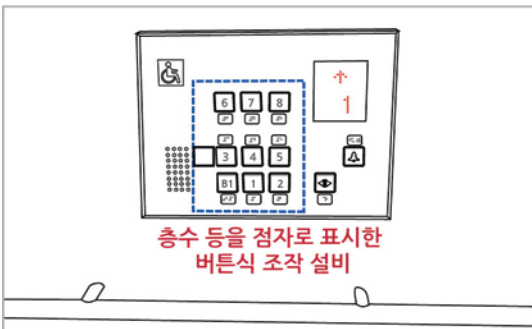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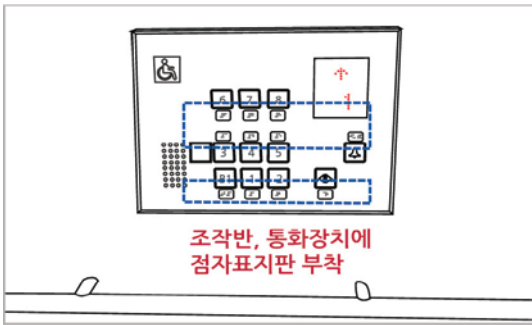
편의시설 자가진단 [내부시설]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등

질문 사항	19. 승강기 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에 가로형으로 0.85m 내외의 높이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우측 가로형 0.85m 내외	미흡 ☐ 기준 초과, 미만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진입방향 우측 0.85m 내외의 높이에 가로형 조작반을 설치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20. 승강기 조작설비가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한 버튼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점자표시 버튼식	미흡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조작 설비가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한 버튼식을 설치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21. 승강기 조작반, 통화장치에 점자표지판을 부착되어 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점자표지판 부착	미흡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조작반, 통화장치에 점자표지판을 부착한 사례 사진		

편의시설 자가진단 [내부시설]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등

질문 사항	22. 승강기 내부에 0.8m이상 0.9m이하의 높이(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쪽 손잡이 0.85m내외, 아래쪽 손잡이 0.65m 내외)에 손잡이가 연속 또는 3cm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규정에 맞춤	☐ 규정에 미흡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손잡이 연속설치

3cm 이내

0.8~0.9m 이하

0.85m 내외

0.65m 내외

손잡이 높이

이중 손잡이 높이

0.8m이상 0.9m이하

3cm이내

0.8m이상 0.9m이하

승강기 내부에 0.8m이상, 0.9m이하의 높이에 손잡이를 설치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23. 손잡이 지름은 3.2cm이상 3.8cm이하이고,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cm내외로 설치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규정에 맞춤	☐ 규정에 미흡	☐ 미설치

상세 이미지

Ø3.2~3.8cm 이하

5cm 내외

손잡이 지름

벽이 있는 경우

지름 3.2~3.8cm 이하

5cm 내외

지름 3.2~3.8cm 이하

지름 3.2~3.8cm 이하

지름은 3.2cm이상, 3.8cm이하, 간격은 5cm내외로 설치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24.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 거울이 0.6m이상의 높이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휠체어가 180° 회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설치에 체크)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0.6m이상	☐ 0.6m미만	☐ 미설치

상세 이미지

거울

0.6m이상

0.6m이상 높이에 거울설치

승강기 내부 후면의 0.6m이상 높이에 거울을 설치한 사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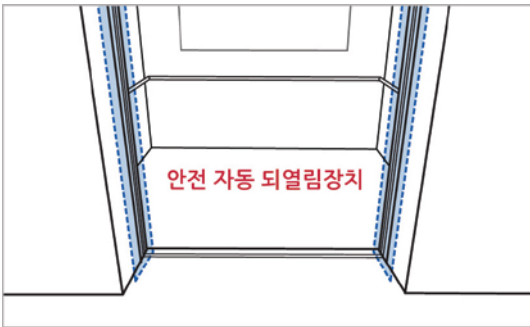
편의시설 자가진단 [내부시설]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등

질문 사항	25. 각 층 승강장에 승강기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과 음향 신호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음향신호장치 도착표시 점멸등	 각층에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과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26. 승강기 내부에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과 음성 신호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음성신호장치 도착표시 점멸등	 내부에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과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27.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 문에 끼었을 경우 문이 자동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설치	☐ 규정에 미흡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안전 자동 되열림장치	 문이 자동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한 사례 사진		

편의시설 자가진단 [내부시설]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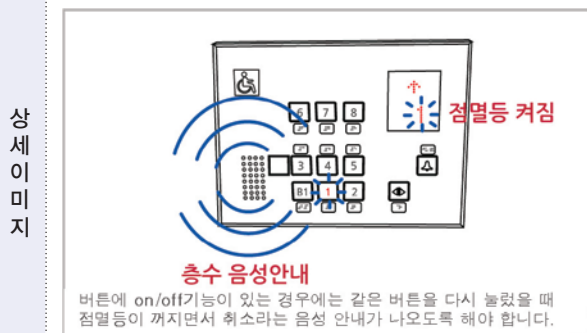
-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등

질문 사항	28. 장애인용 승강기 호출버튼의 0.3m 전면에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0.3m 전면에 점형블록	미흡	미설치 ☐ 미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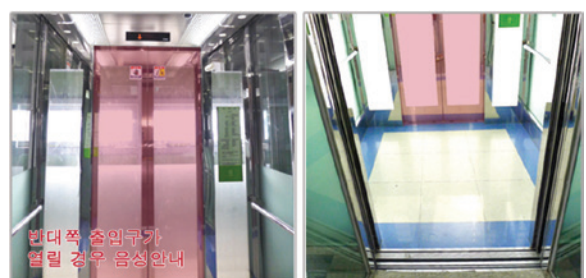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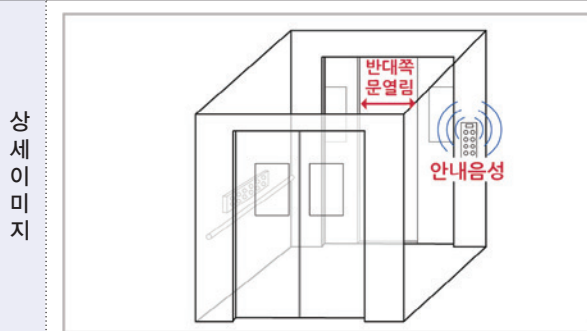
호출버튼 0.3m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29. 승강기 내부의 층수선택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선택된 층수 안내음성이 나오도록 되어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내부층수 안내음성	미흡	미설치 ☐ 미설치



층수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층수음성안내를 설치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30.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승강기인 경우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는 안내음성이 나오도록 되어있습니까? (층별 출입구가 한 방향인 경우에는 설치에 체크)	적용여부		
		설치 ☐ 출입구 안내음성	미흡	미설치 ☐ 미설치



출입구가 다른 경우 출입구 방향을 알려주는 안내음성이 나오는 사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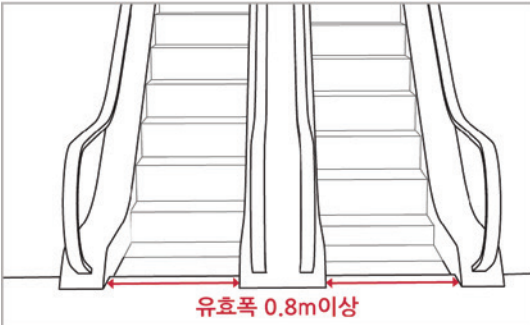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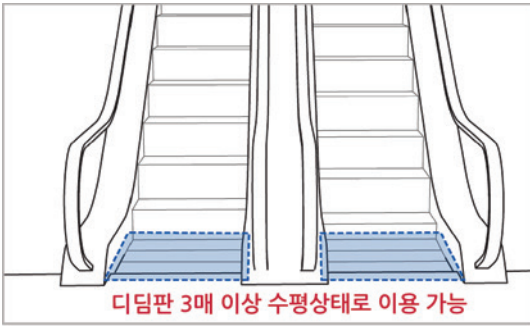
편의시설 자가진단 [내부시설]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등

질문 사항	31.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가 150룩스 이상으로 되어있 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150룩스 이상	☐ 기준 미만	☐ 미설치
상 세 이 미 지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가 150룩스 이상으로 되어있는 사례 사진		
질문 사항	32.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이 0.8m이상입니까?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0.8m 이상	☐ 0.8m 미만	☐ 미설치
상 세 이 미 지		 유효폭이 0.8m 이상인 에스컬레이터 사례 사진		
질문 사항	33.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와 내릴 때 디딤판을 3매 이상 수평상태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3매 이상	☐ 3매 이하	☐ 미설치
상 세 이 미 지		 휠체어사용자승하강시 디딤판을 3매 이상 수평상태로 이용가능한 사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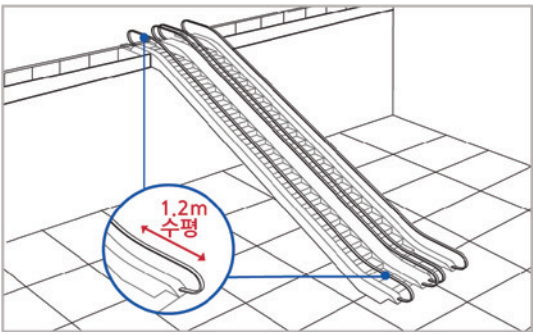
편의시설 자가진단 [내부시설]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등

질문 사항	34. 에스컬레이터의 속도가 분당 30m이내이고, 양측면 손잡이가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도록 되어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속도기준 준수	미흡 ☐ 속도기준 미흡	미설치
상세 이미지		 에스컬레이터 손잡이가 디딤판과 같은 속도인 30m/분 이내로 움직이는 사례 사진		
질문 사항	35. 에스컬레이터의 시작과 끝 부분에 수평이동손잡이가 1.2m 이상 설치되어 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1.2m이상	미흡 ☐ 1.2m미만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에스컬레이터 시작과 끝부분 수평이동손잡이가 1.2m이상 설치된 사례 사진		

위생시설

01. 화장실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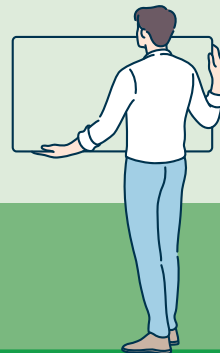
02. 대변기 44

03. 소변기 50

04. 세면대 52

05. 욕 실 53

06. 샤워실 / 탈의실 56



편의시설 자가진단 [위생시설]

화장실

대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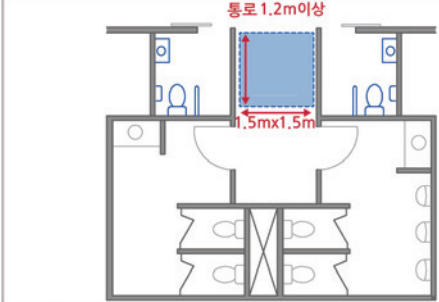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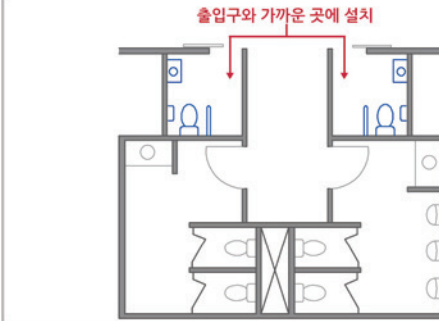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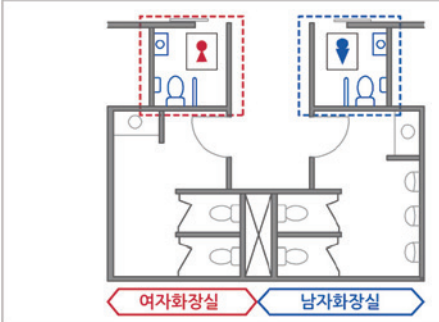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탈의실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일반사항)

질문 사항	1.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까?	적용여부 <table border="1"> <tr> <th>설치</th><th>미흡</th><th>미설치</th></tr> <tr> <td>☐ 1.2m이상 통로연결</td><td>☐ 0.9m이상 통로연결</td><td>☐ 0.9m미만 통로연결</td></tr> </table>	설치	미흡	미설치	☐ 1.2m이상 통로연결	☐ 0.9m이상 통로연결	☐ 0.9m미만 통로연결
설치	미흡	미설치						
☐ 1.2m이상 통로연결	☐ 0.9m이상 통로연결	☐ 0.9m미만 통로연결						
상세 이미지	 통로 1.2m이상 1.5m x 1.5m *휠체어의 방향전환이 필요한 통로의 경우 1.5mX1.5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1.2m이상 1.2m이상의 통로에 연결하여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2.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가 출입구(문)와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적용여부 <table border="1"> <tr> <th>설치</th><th>미흡</th><th>미설치</th></tr> <tr> <td>☐ 출입구와 가까운 곳</td><td>☐ 출입구와 먼 곳</td><td>☐ 미설치</td></tr> </table>	설치	미흡	미설치	☐ 출입구와 가까운 곳	☐ 출입구와 먼 곳	☐ 미설치
설치	미흡	미설치						
☐ 출입구와 가까운 곳	☐ 출입구와 먼 곳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설치	 출입구 근처에 변기, 세면대 설치 출입구 출입구 가까운 곳에 장애인용 변기, 세면대를 설치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3.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남, 여 구분하여 각 1개 이상 설치하였습니까?	적용여부 <table border="1"> <tr> <th>설치</th><th>미흡</th><th>미설치</th></tr> <tr> <td>☐ 남,여 구분 1개 이상</td><td>☐ 남,여 미구분</td><td>☐ 미설치</td></tr> </table>	설치	미흡	미설치	☐ 남,여 구분 1개 이상	☐ 남,여 미구분	☐ 미설치
설치	미흡	미설치						
☐ 남,여 구분 1개 이상	☐ 남,여 미구분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여 구분하여 각 1개씩 설치한 사례 사진						

편의시설 자가진단 [위생시설]

화장실

대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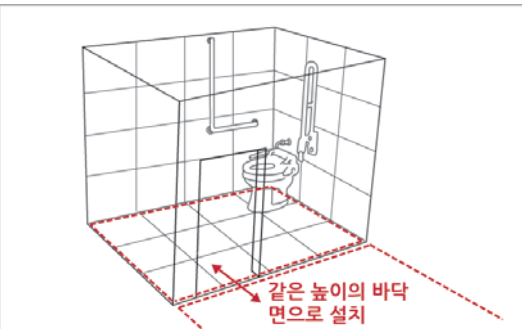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탈의실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일반사항)

질문 사항	4.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남, 여 각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등의 시설을 구비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남, 여 구분 1개 이상	☐ 1개 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기저귀교환대의 경우도 설치 가능하며, 설치시 높이는 바닥면에서부터 0.7m 높이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5. 화장실 바닥면에 높이차이가 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높이차이 없음		☐ 높이차이 있음
상세 이미지	 같은 높이의 바닥면으로 설치	 바닥면에 높이차이가 없는 화장실 사례 사진		
질문 사항	6. 바닥표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미끄럽지 않음 (①, ②, ③)		☐ 미끄러움 (④)
상세 이미지	 ① 모자이크타일(설치) ② 미끄럼방지타일(설치) ③ 미끄럼방지(설치) ④ 미끄러운타일(미설치)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한 화장실 바닥 사례 사진		

편의시설 자가진단 [위생시설]

화장실

대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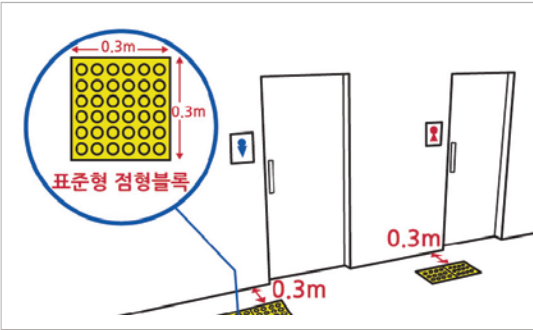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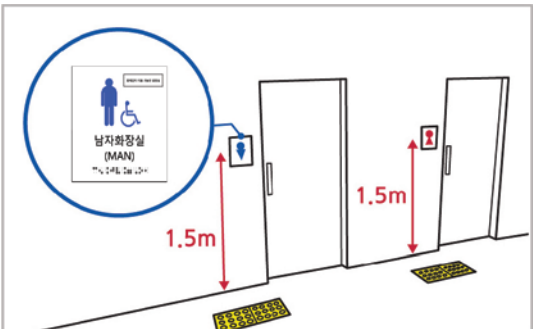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탈의실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일반사항)

질문 사항	7. 화장실 출입구 옆에 점형블록을 0.3m 이격하여 설치하였 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표준형 0.3m 이격 설치	미흡 ☐ 비표준형 설치	미설치 ☐ 미설치
상 세 이 미 지				
		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에서 0.3m 이격하여 점형블록을 설치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8. 남, 여 구분용 점자표지판을 화장실 출입구(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 부착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1.5m 높이에 부착	미흡 ☐ 규정에 미흡	미설치 ☐ 미설치
상 세 이 미 지				
		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에 남,여 구분용 점자표지판을 부착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9. 대변기 세정장치는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세정장치 사용 쉬운 형태(①, ②)	미흡 ☐ 세정장치 사용 어려운 형태(③, ④)	미설치 ☐ 미설치
상 세 이 미 지				
		대변기 세정장치를 광감지식으로 설치한 사례 사진		

편의시설 자가진단 [위생시설]

화장실

대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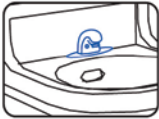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탈의실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일반사항]

질문 사항	10. 수도꼭지는 광감지식 · 누름버튼식 · 레버식 등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수도꼭지 사용 쉬운 형태(①, ②, ③)	☐ 수도꼭지 사용 어려운 형태(④)	☐ 미설치
상 세 이 미 지	 ① 광감지식(설치)  ② 레버식(설치)  ③ 누름버튼식(설치)  ④ 핸들식(미흡)			
	 레버식 수도꼭지  광감지식 수도꼭지 사용하기 쉬운 형태의 수도꼭지를 설치한 사례 사진			

편의시설 자가진단 [위생시설]

화장실

대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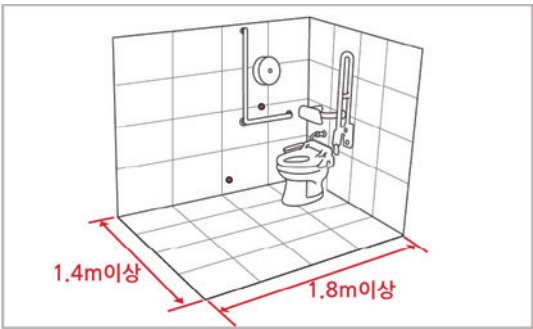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탈의실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대변기)

질문 사항	1-1.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0mX 깊이 1.8m이상입니까? (2005. 12. 29. 이전)	적용여부		
		설치 ☐ 폭 1.0m X 깊이 1.8m이상	미흡 ☐ 폭 1.0m X 깊이 1.8m미만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대변기 유효 바닥면적이 1.0mX 깊이 1.8m이상인 사례 사진
질문 사항	1-2.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4mX 깊이 1.8m이상입니까? (2005. 12. 30. 이후 ~ 2018. 8. 9. 이전)	적용여부		
		설치 ☐ 폭 1.4m X 깊이 1.8m이상	미흡 ☐ 폭 1.4m X 깊이 1.8m미만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대변기 유효 바닥면적이 1.4mX 깊이 1.8m이상인 사례 사진
질문 사항	1-3.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6mX 깊이 2.0m이상입니까? (2018. 8. 10. 이후)	적용여부		
		설치 ☐ 폭 1.6m X 깊이 2.0m이상	미흡 ☐ 폭 1.6m X 깊이 2.0m미만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대변기 유효 바닥면적이 1.6mX 깊이 2.0m이상인 사례 사진

편의시설 자가진단 [위생시설]

화장실

대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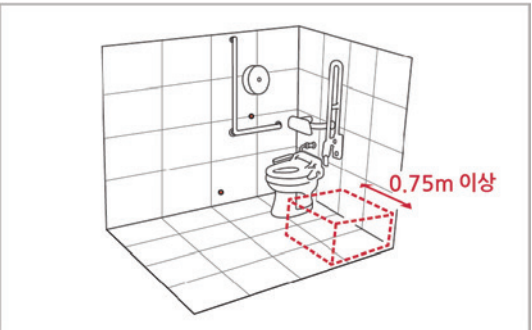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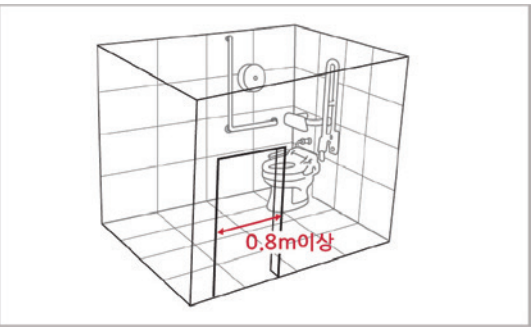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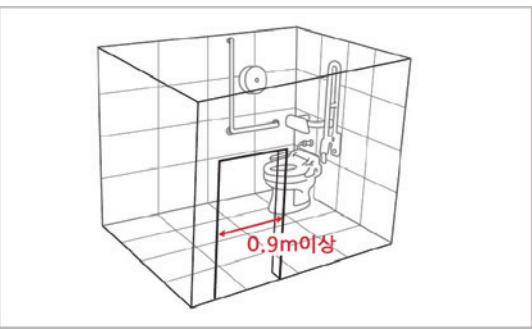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탈의실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대변기)

질문 사항	2.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 휠체어의 측면 접근을 위하여 0.75m이상 활동공간을 확보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0.75m이상	☐ 0.75m미만	☐ 미설치
상세 이미지				대변기 측면에 휠체어의 측면 접근을 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3-1. 대변기 칸막이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을 0.8m이상 확보 하였습니까? [2018. 8. 9. 이전]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0.8m이상	☐ 0.8m미만	☐ 미설치
상세 이미지				대변기 칸막이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이 0.8m이상인 사례 사진
질문 사항	3-2. 대변기 칸막이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을 0.9m이상 확보 하였습니까? [2018. 8. 10. 이후]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0.9m이상	☐ 0.9m미만	☐ 미설치
상세 이미지				대변기 칸막이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이 0.9m이상인 사례 사진

편의시설 자가진단 [위생시설]

화장실

대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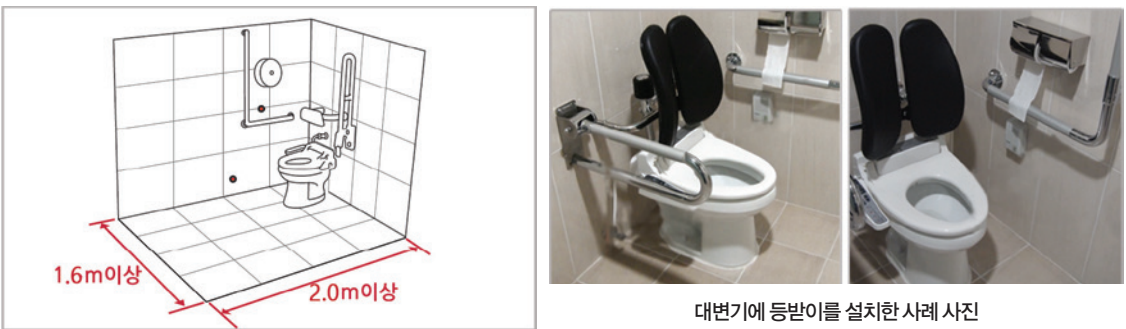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탈의실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대변기)

질문 사항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4. 대변기 칸막이 출입문의 형태가 미닫이문, 접이문, 밖여닫이문을 설치하였습니까?		☐ 미닫이문, 접이문, 밖여닫이문	☐ 주름문	☐ 안여닫이 (내부공간 미확보)
상세 이미지		 대변기 칸막이 출입문이 자동문으로 설치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5. 대변기의 형태가 양변기이며,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이상, 0.45m이하의 높이에 설치되어있습니까?		☐ 양변기 설치 및 좌대높이 기준적용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좌대높이가 0.4m이상, 0.45m이하인 양변기를 설치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6. 대변기에 등받이를 설치하였습니까?		☐ 등받이 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대변기에 등받이를 설치한 사례 사진		

편의시설 자가진단 [위생시설]

화장실

대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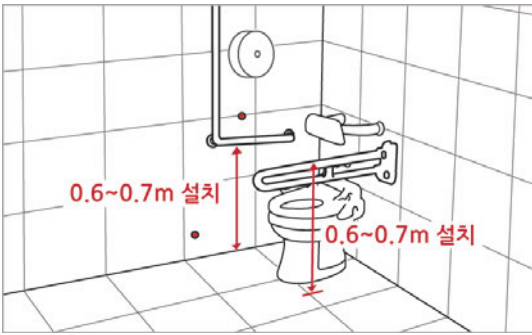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탈의실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대변기)

질문 사항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7.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않습니까?	☐ 닿지 않음		☐ 발판닿음
상세 이미지	 대변기 전면 트랩부분에 휠체어 발판이 닿지 않음	 휠체어 발판이 닿지 않는 형태	 휠체어 발판이 닿지 않는 형태	대변기 전면 트랩부분이 휠체어의 발판에 닿지 않는 형태로 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8. 대변기의 양옆에 수평손잡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6m이상, 0.7m이하의 높이에 설치되어있습니까?	☐ 0.6m이상 ~ 0.7m이하	☐ 기준 초과, 미만 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0.6~0.7m 설치	 0.6~0.7m	 0.6~0.7m	대변기 양옆 0.6m~0.7m 높이에 수평손잡이를 설치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9. 벽측 수평손잡이는 변기 중심에서 0.4m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였습니까?	☐ 0.4m이내	☐ 0.75m미만	☐ 미설치
상세 이미지	 0.4m이내 0.7m내외 변기 중심 양옆 수평손잡이의 간격을 0.7m 내외로 할 수 있습니다.	 0.4m이내	 0.4m이내	벽측 수평손잡이를 변기 중심에서 0.4m이내의 지점에 설치한 사례 사진

편의시설 자가진단 [위생시설]

화장실

대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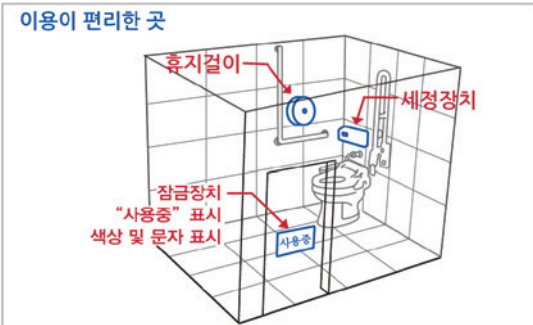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탈의실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대변기)

질문 사항	10. 다른쪽 수평손잡이는 0.6m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회전식 손잡이	미흡 ☐ 고정식 손잡이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0.6m내외의 길이의 회전식 수평손잡이를 설치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11. 대변기의 한쪽 옆에 수직손잡이를 바닥면으로부터 0.6m 내외의 높이에 설치하고, 길이는 0.9m이상으로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0.9m이상	미흡 ☐ 0.9m미만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수직손잡이를 규정에 맞게 벽에 고정하여 설치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12. 화장실의 세정장치, 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설치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기준적용	미흡 ☐ 미흡설치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이용이 편리한 곳 	 세정장치, 휴지걸이 및 잠금장치를 규정대로 설치한 사례 사진		

편의시설 자가진단 [위생시설]

화장실

대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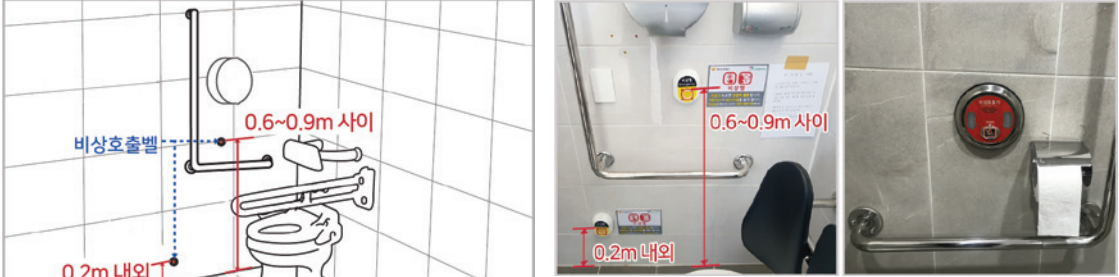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탈의실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대변기)

질문 사항	13. 비상사태 대비 비상용 벨은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로부터 0.6m~0.9m사이의 높이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바닥면으로부터 0.2m 내외의 높이에서도 이용 가능해야함)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기준적용	☐ 미흡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비상호출벨 0.6~0.9m 사이 0.2m 내외 비상용 벨을 규정에 맞는 높이에 설치한 사례 사진			

편의시설 자가진단 [위생시설]

화장실

대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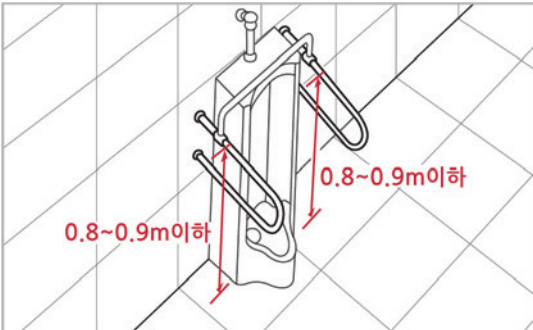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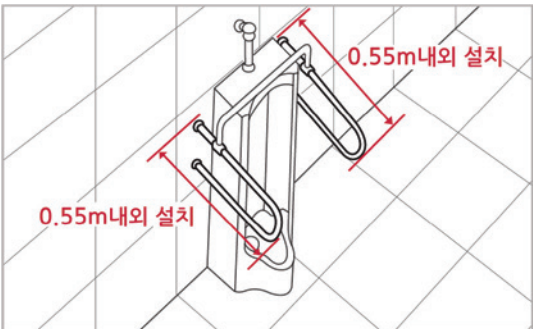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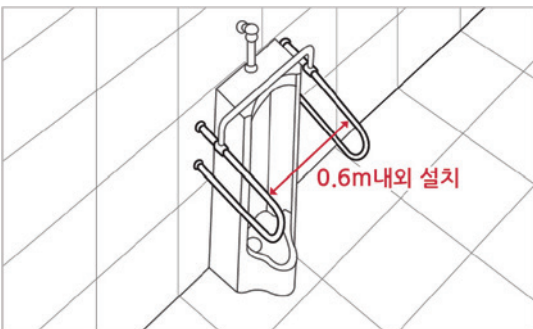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탈의실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소변기)

질문 사항	1.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이상 0.9m이하에 설치되어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0.8m이상 ~ 0.9m이하	미흡 ☐ 0.8m미만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수평손잡이를 0.8m~0.9m 높이에 설치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2. 수평손잡이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내외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0.55m내외	미흡 ☐ 0.55m미만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수평손잡이를 벽면으로부터 0.55m내외로 설치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3. 좌우 수평손잡이의 간격은 0.6m내외로 설치되어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0.6m내외	미흡 ☐ 0.6m초과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좌우 수평손잡이 간격을 0.6m내외로 설치한 사례 사진

편의시설 자가진단 [위생시설]

화장실

대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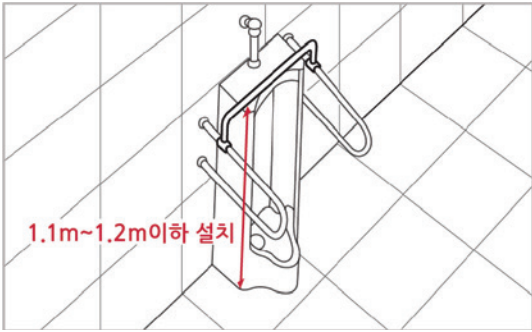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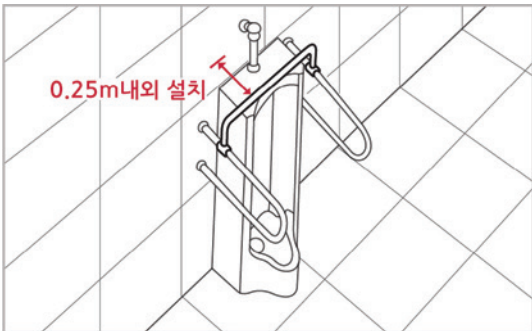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탈의실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소변기)

질문 사항	4.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m이상 1.2m이하에 설치되어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1.1m이상 ~ 1.2m이하	미흡 ☐ 기준 초과, 미만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수직손잡이를 1.1m~1.2m 높이에 사례 사진		
질문 사항	5. 수직손잡이는 벽면으로부터 0.25m내외로 돌출하여 설치되어 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0.25m내외	미흡 ☐ 0.25m초과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돌출폭이 벽면으로부터 0.25m 내외인 수직손잡이 사례 사진		

편의시설 자가진단 [위생시설]

화장실

대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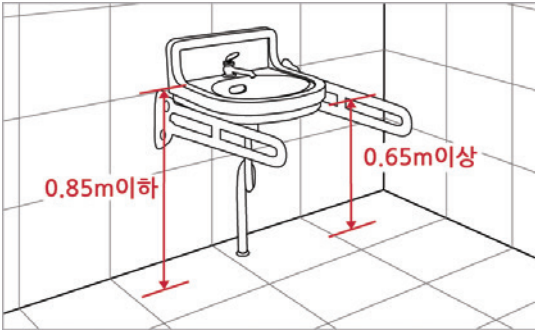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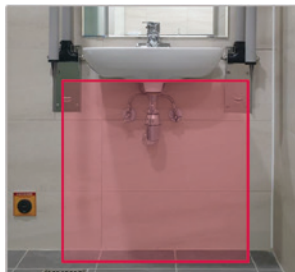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탈의실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세면대)

질문 사항	1. 세면대의 상단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85m이하, 하단 높이는 0.65m이상으로 설치되어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상단높이 0.85m이하, 하단높이 0.65m이상	미흡 ☐ 기준 초과, 미만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상단높이가 0.85m, 하단높이가 0.65m이상 설치된 세면대 사례 사진
질문 사항	2.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발판 들어갈 수 있는 형태	미흡 ☐ 발판 들어갈 수 없는 형태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세면대 하부에 무릎 및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형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3. 수도꼭지 냉·온수의 구분이 점자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냉·온수 구분 점자표시	미흡 ☐ 미흡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수도꼭지의 냉·온수 구분이 점자로 되어있는 사례 사진

편의시설 자가진단 [위생시설]

화장실

대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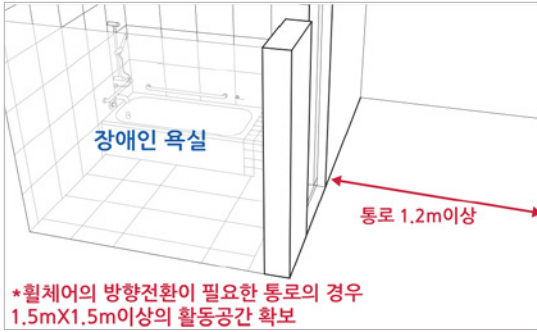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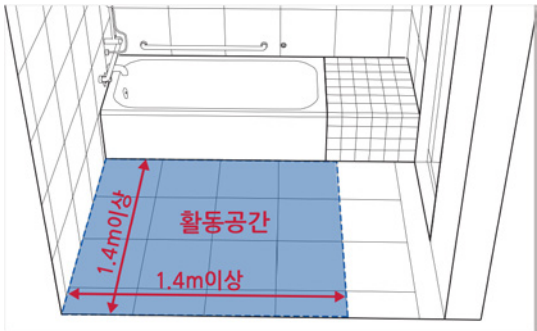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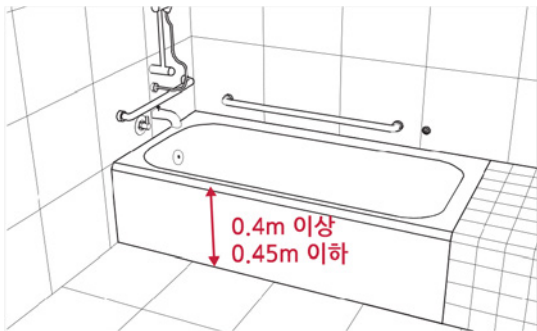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탈의실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욕실)

질문 사항	1. 장애인 등이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욕실을 설치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1.2m이상	미흡 ☐ 0.9m이상	미설치 ☐ 0.9m미만
상세 이미지		 욕실 접근 통로의 유효폭이 1.2m이상인 사례 사진		
질문 사항	2. 욕조의 전면에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1.4mX1.4m이상	미흡 ☐ 1.4mX1.4m미만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욕실 접근 통로의 유효폭이 1.4m이상인 사례 사진		
질문 사항	3.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이상 0.45m이하입니까?	적용여부		
		설치 ☐ 0.4m~.045m사이	미흡 ☐ 기준 초과, 미만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욕조의 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4m이상, 0.45m이하인 사례 사진		

편의시설 자가진단 [위생시설]

화장실

대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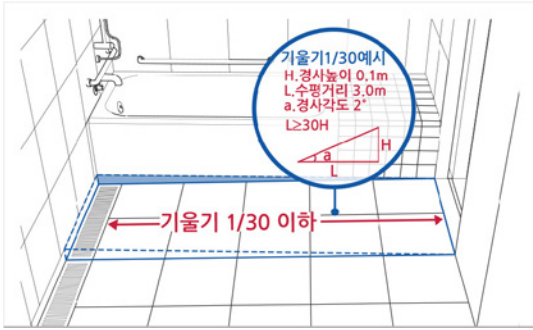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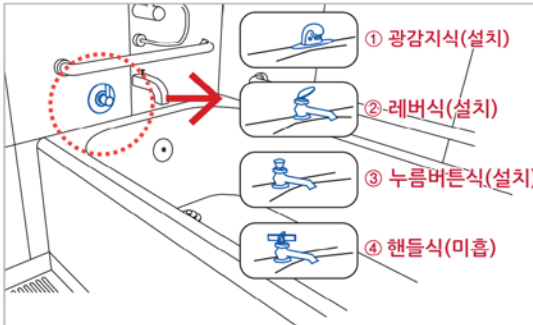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탈의실

· 장애인등의 이용 가능한 화장실 (욕실)

질문 사항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4. 바닥면의 기울기는 1/30이하입니까?		☐ 1/30이하	☐ 1/30초과	
상세 이미지	  바닥면의 기울기가 1/30이하인 욕실 바닥 사례 사진			
5. 욕실 및 욕조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하였습니까?		☐ 미끄럽지 않음 ①, ②, ③		☐ 미끄러움 ④
상세 이미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한 욕실 바닥 사례 사진			
6. 욕조의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였습니까?		☐ 수도꼭지 사용이 쉬운 형태(①, ②, ③)	☐ 수도꼭지 사용이 어려운 형태(④)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사용하기 쉬운 형태의 수도꼭지 사례 사진			

편의시설 자가진단 [위생시설]

화장실

대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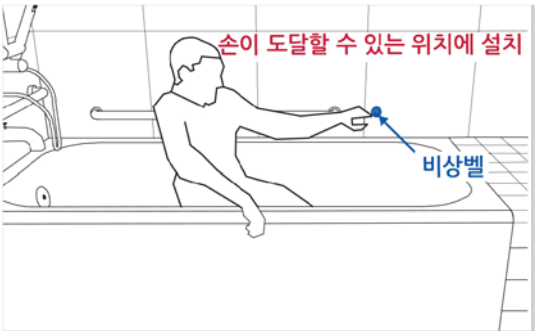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탈의실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욕실)

질문 사항	7.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손이 도달하기 어려운 위치에 설치
상세 이미지				사용하기 쉬운 형태의 샤워기 사례 사진
질문 사항	8.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비상용 벨을 설치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손이 닿는 위치에 비상용 벨 설치	☐ 손이 닿지 않는 위치에 비상용 벨 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비상용 벨 설치 사례 사진

편의시설 자가진단 [위생시설]

화장실

대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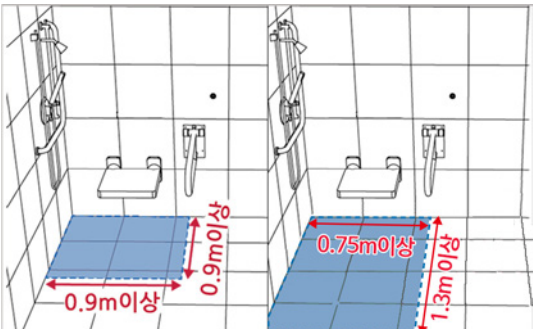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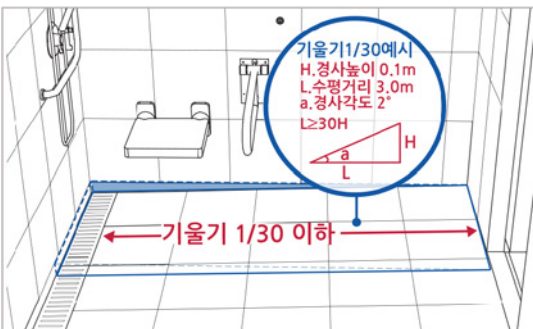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탈의실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샤워실/탈의실)

질문 사항	1.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을 설치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1.2m 이상	미흡 ☐ 0.9m 이상	미설치 ☐ 0.9m 미만
상세 이미지		 욕실 접근 통로의 유효폭이 1.2m 이상인 사례 사진		
질문 사항	2. 샤워실(샤워부스를 포함)의 유효바닥면적은 0.9mX.9m 또는 0.75mX1.3m 이상으로 확보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0.9mX.9m 또는 0.75mX1.3m 이상	미흡 ☐ 0.9mX.9m 또는 0.75mX1.3m 미만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샤워실의 적절한 면적 확보 사례 사진		
질문 사항	3. 샤워실 바닥면의 기울기는 1/30 이하입니까?	적용여부		
		설치 ☐ 1/30 이하	미흡 ☐ 1/30 초과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샤워실 바닥 기울기가 1/30 이하인 사례 사진		

편의시설 자가진단 [위생시설]

화장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탈의실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샤워실/탈의실)

질문 사항	4. 샤워실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미끄럽지 않음 (①, ②, ③)	미흡	미설치 ☐ 미끄러움 (④)
상세 이미지	 ① 모자이크타일(설치) ② 미끄럼방지타일(설치) ③ 미끄럼방지(설치) ④ 미끄러운타일(미설치)	 모자이크타일 미끄럼방지타일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한 욕실 바닥 사례 사진		
질문 사항	5. 샤워기의 수도꼭지는 광감자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수도꼭지 사용이 쉬운 형태(①, ②, ③)	미흡 ☐ 수도꼭지 사용이 어려운 형태(④)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① 광감자식(설치) ② 레버식(설치) ③ 누름버튼식(설치) ④ 핸들식(미흡)	 누름버튼식 수전 레버식 수전 사용하기 쉬운 형태의 수도꼭지 사례 사진		
질문 사항	6.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높낮이 조절가능	미흡 ☐ 고정식 입식샤워기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손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	 앉은채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거리 샤워기의 이용이 용이함에 대한 사례 사진		

편의시설 자가진단 [위생시설]

화장실

대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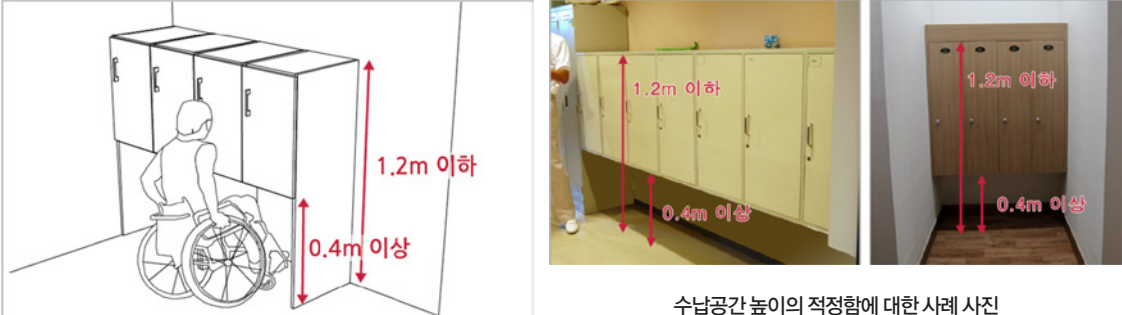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탈의실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샤워실/탈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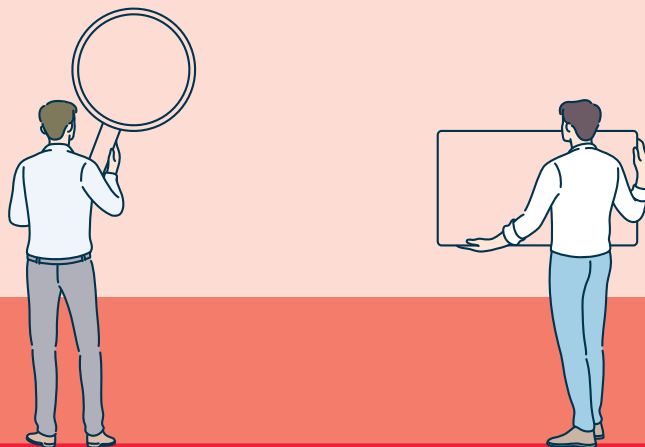
질문 사항	적용여부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7. 샤워실에 샤워용 접이식 의자를 바닥면으로부터 0.4m이상, 0.45m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였습니까?		☐ 0.4m~0.45m사이	☐ 기준 초과, 미만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샤워실 접이식 의자 높이의 적정함에 대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적용여부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8. 탈의실 수납공간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이상, 1.2m 이하로 설치하였습니까?		☐ 0.4m~1.2m사이	☐ 기준 초과, 미만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수납공간 높이의 적정함에 대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적용여부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9. 탈의실 수납공간의 하부에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까?		☐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깊이 0.45m이상 확보	☐ 깊이 0.45m이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수납공간의 하부에 공간 확보 수납공간 하부 공간 확보 사례 사진		

안내시설

01. 점자블록 60

02. 유도 및 안내설비 64

03. 경보 및 피난설비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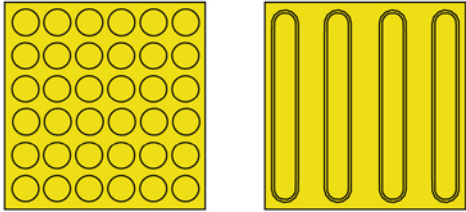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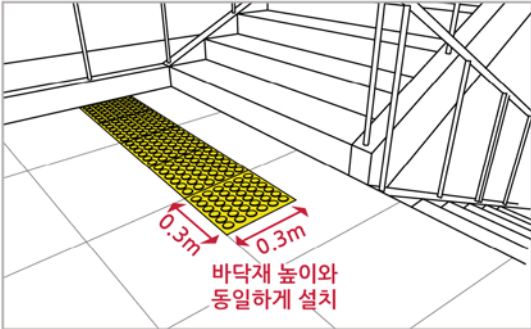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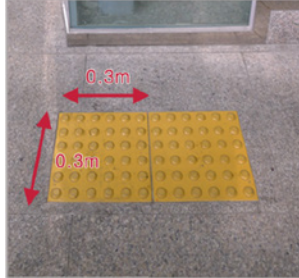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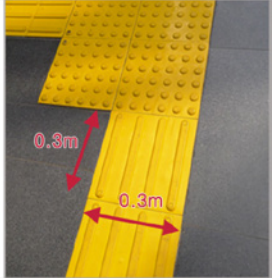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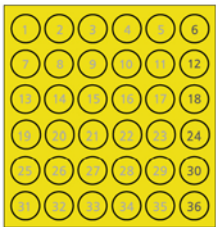
편의시설 자가진단 [안내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 **점자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질문 사항	1. 점자블록은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형 선형블록을 사용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점형블록, 선형블록 사용	미흡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점형블록 선형블록	 점형블록	 선형블록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형 선형블록 사례 사진
질문 사항	2. 점자블록의 크기가 0.3mX0.3m인 표준형을 설치하였고,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설치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표준형으로 높이차 없이 설치	미흡 ☐ 비표준형 설치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바닥재 높이와 동일하게 설치			표준형 점자블록을 바닥재와 높이차 없이 설치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3.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지고있는 표준형으로 설치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표준형 설치	미흡 ☐ 비표준형 설치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36개의 돌출점	 36개의 돌출점	 36개의 돌출점	표준형 점형블록을 설치한 사례 사진

편의시설 자가진단 [안내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 **점자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질문 사항	4.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 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 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되어있고, 돌출점의 높이는 $0.6 \pm 0.1\text{cm}$ 로 되어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규정에 맞춤	☐ 규정미흡	☐ 미설치
상세 이미지				돌출점 형태를 규정에 맞게 설치한 점형블록 사례 사진
질문 사항	5. 선형블록은 블록 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표준형으로 설치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표준형 설치	☐ 비표준형 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표준형 선형블록을 설치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6.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 평면형이고 돌출선의 높이는 $0.5 \pm 0.1\text{cm}$ 로 되어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규정에 맞춤	☐ 규정미흡	☐ 미설치
상세 이미지				돌출선 형태를 규정에 맞게 설치한 선형블록 사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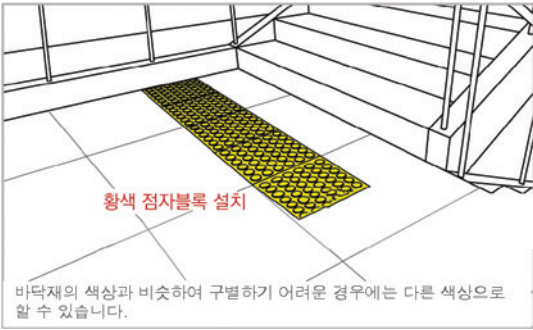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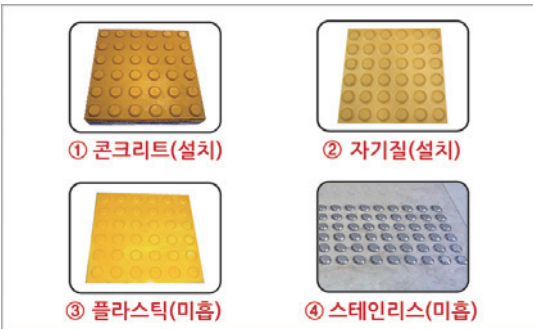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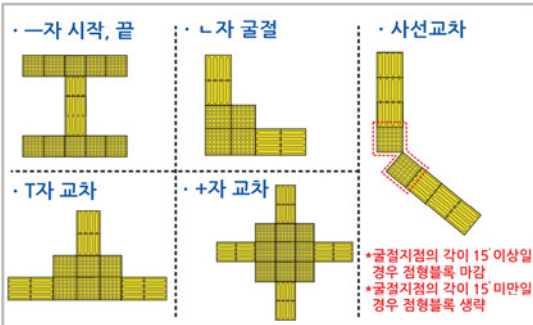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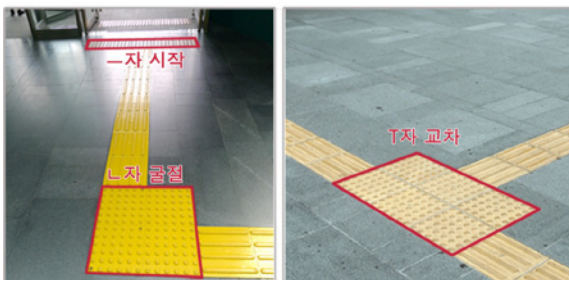
편의시설 자가진단 [안내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 **점자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질문 사항	7. 점자블록의 색상은 황색으로 설치되어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황색설치	미흡 ☐ 돌출점, 돌출선만 황색	미설치 ☐ 바닥과 비슷한 색, 스테인레스
상세 이미지	 황색 점자블록 설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황색 점자블록을 설치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8.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은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반사되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①, ②,)	미흡 ☐ 반사되고 미끄러운 재질(③, ④)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① 콘크리트(설치) ② 자기질(설치) ③ 플라스틱(미흡) ④ 스테인리스(미흡)	 콘크리트 점자블록 자기질 점자블록 실외에 미끄럽지 않은 재료로 된 점자블록을 설치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9. 점형블록이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승강장 등 시각 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위험한 장소의 0.3m 전면과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설치되어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규정에 맞춤	미흡 ☐ 규정에 미흡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 一자 시작, 끝 · L자 굴절 · 사선교차 · T자 교차 · +자 교차 * 굴절지점의 각이 15° 이상일 경우 점형블록 마감 * 굴절지점의 각이 15° 미만일 경우 점형블록 생략	 一자 시작 L자 굴절 T자 교차 선형블록이 시작, 굴절, 교차되는 부분에 점형블록을 설치한 사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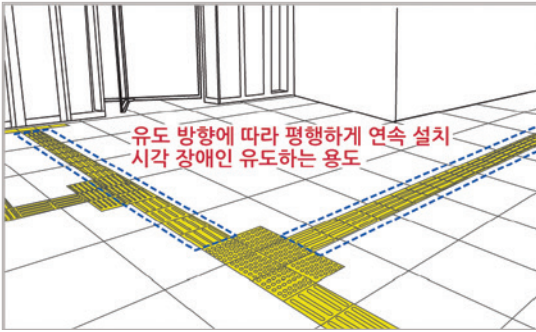
편의시설 자가진단 [안내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 **점자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질문 사항	10. 건축물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 신형블록을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하여 설치 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규정에 맞춤	☐ 규정미흡	☐ 미설치
상 세 이 미 지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쓴 신형블록 사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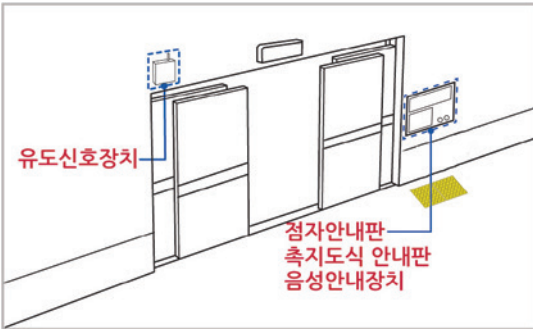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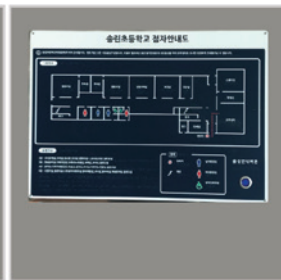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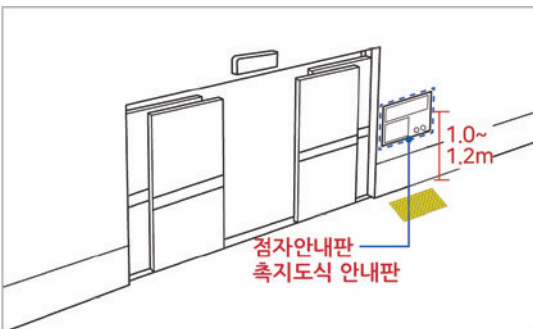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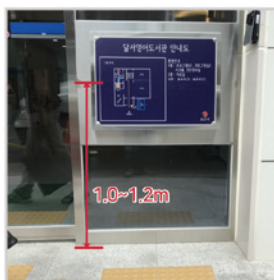
편의시설 자가진단 [안내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질문 사항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1.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 안내 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가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습니까?		☐ 1개 이상 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점자 안내판 설치 주출입구 부근에 촉지도식 안내판과 점자안내판을 설치한 사례 사진		
2.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가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되어 있습니까?		☐ 주요시설 점자, 양각으로 표시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주요시설의 배치를 점자, 선으로 표시한 안내판 사례 사진		
3.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m~1.2m 범위 안에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까?		☐ 1.0m~1.2m 사이에 설치	☐ 기준 초과, 미만	☐ 미설치
상세 이미지		   1.0~1.2m 1.0~1.2m 1.0~1.2m 안내판 중심선 높이를 1.0m~1.2m 범위안에 설치한 사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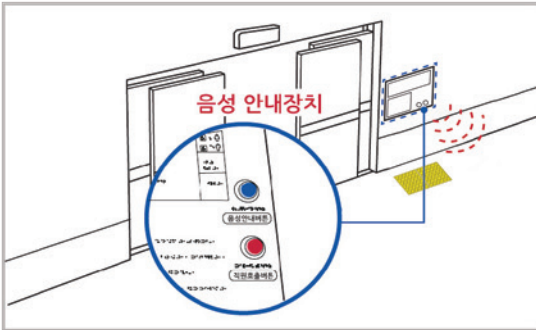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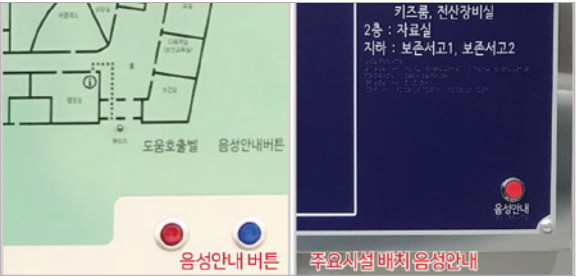
편의시설 자가진단 [안내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질문 사항	4. 시각장애인을 음성안내장치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주요시설 음성안내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시각장애인을 위해 주요시설 배치를 안내하는 음성안내장치 사례 사진			
질문 사항	5. 시각장애인을 유도신호장치는 음향·시각·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시각장애인을 유도신호장치가 설치된 사례 사진			

편의시설 자가진단 [안내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질문 사항	1.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이 설치되어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경보설비출구까지 연속설치	☐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경보설비출구까지비연속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질문 사항	2. 비상벨설비주변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이 함께 설치되어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비상벨주변 비상경보등 출구까지 연속설치	☐ 비상벨주변 비상경보등 출구까지 비연속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질문 사항	3. 시각 및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이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그 밖의 시설

01. 객실 / 침실 68

02. 관람석 / 열람석 79

03. 접수대 / 작업대 81

04. 매표소 / 판매기 / 음료대 82

05.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85

06. 비치용품 87



편의시설 자가진단 [그 밖의 시설]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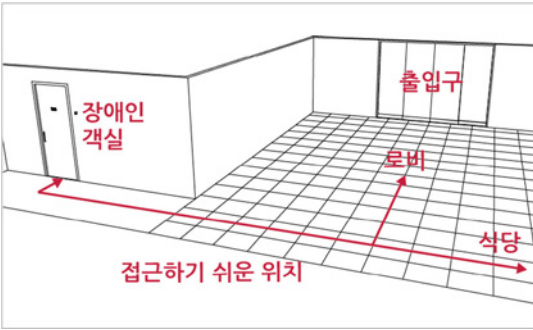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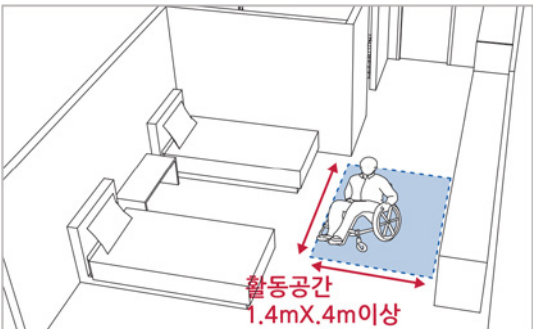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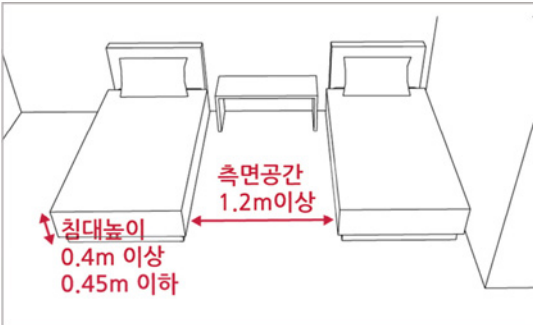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휴게시설

비치용품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질문 사항	1. 객실 또는 침실을 식당·로비 등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연속설치	미흡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장애인 객실의 위치 사례 사진		
질문 사항	2. 객실 또는 침실 내부에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 되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1.4mX1.4m이상	미흡 ☐ 1.4mX1.4m미만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객실 내 휠체어 이동공간 확보 사례 사진		
질문 사항	3. 침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이상 0.45m이하이며, 그 측면에 1.2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높이 0.4m~0.45m 사이, 측면1.2m이상	미흡 ☐ 기준 초과, 미만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침대 옆 공간확보 및 침대높이의 적정함에 대한 사례 사진		

편의시설 자가진단 [그 밖의 시설]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휴게시설

비치용품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질문 사항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4. 객실 또는 침실의 바닥면을 높이차이 없이 설치하였습니까?	☐ 높이차이 없음		☐ 높이차이 있음
상세 이미지	객실 내 바닥 높이차이가 없는 사례 사진		
5. 바닥표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였습니까?	☐ 미끄럽지 않음 (①, ②, ③)		☐ 미끄러움 (④)
상세 이미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한 객실 바닥 사례 사진		
6. 출입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였습니까?	☐ 규정에 맞춤	☐ 규정미흡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출입문 옆 벽면 점자 표지판 사례 사진		

편의시설 자가진단 [그 밖의 시설]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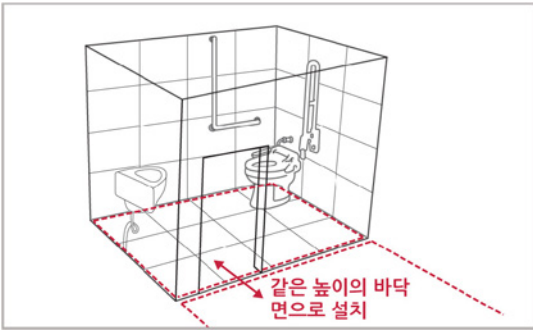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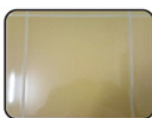
점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휴게시설

비치용품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질문 사항	7. 화장실의 바닥면을 높이차이 없이 설치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높이차이 없음		☐ 높이차이 있음
상세 이미지		 바닥면에 높이차이가 없는 화장실 사례 사진		
질문 사항	8. 화장실의 바닥표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미끄럽지 않음 (①, ②, ③)		☐ 미끄러움 (④)
상세 이미지	    ① 모자이크타일(설치) ② 미끄럼방지타일(설치) ③ 미끄럼방지(설치) ④ 미끄러운타일(미설치)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한 화장실 바닥 사례 사진		
질문 사항	9. 대변기 세정장치는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세정장치 사용 쉬운 형태 (①, ②③)	☐ 세정장치 사용 어려운 형태 (③, ④)	☐ 미설치
상세 이미지	    ① 광감지식(설치) ② 벽밑바닥누름(설치) ③ 측면레버(미흡) ④ 후면레버(미흡)	 대변기 세정장치를 광감지식으로 설치한 사례 사진		

편의시설 자가진단 [그 밖의 시설]

객실/침실

관람식/열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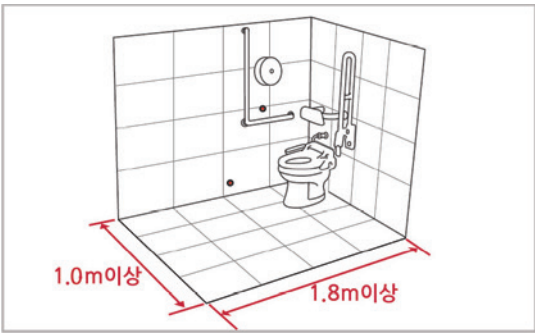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휴게시설

비치용품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질문 사항	10. 수도꼭지는 광감지식 · 누름버튼식 ·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수도꼭지 사용 쉬운 형태(①, ②, ③)	미흡 ☐ 수도꼭지 사용 어려운 형태(④)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① 광감지식(설치) ② 레버식(설치) ③ 누름버튼식(설치) ④ 핸들식(미흡)	 레버식 수도꼭지 광감지식 수도꼭지 사용하기 쉬운 형태의 수도꼭지를 설치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11-1.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0m X 깊이 1.8m 이상입니까? (2005. 12. 29. 이전)	적용여부		
		설치 ☐ 폭 1.0m X 깊이 1.8m 이상	미흡 ☐ 폭 1.0m X 깊이 1.8m 미만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1.0m 이상 1.8m 이상	 대변기 유효 바닥면적이 1.0m X 깊이 1.8m 이상인 사례 사진		
질문 사항	11-2.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4m X 깊이 1.8m 이상입니까? (2005. 12. 30. 이후 ~ 2018. 8. 9. 이전)	적용여부		
		설치 ☐ 폭 1.4m X 깊이 1.8m 이상	미흡 ☐ 폭 1.4m X 깊이 1.8m 미만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1.4m 이상 1.8m 이상	 대변기 유효 바닥면적이 1.4m X 깊이 1.8m 이상인 사례 사진		

편의시설 자가진단 [그 밖의 시설]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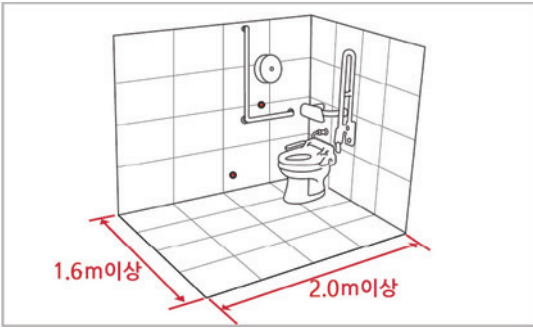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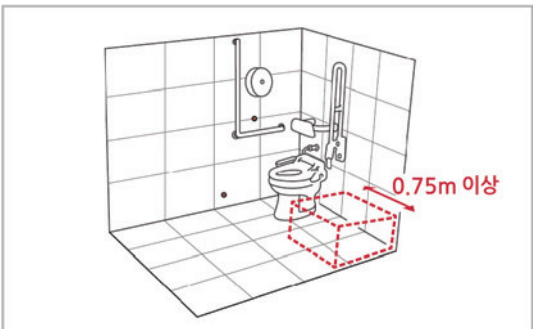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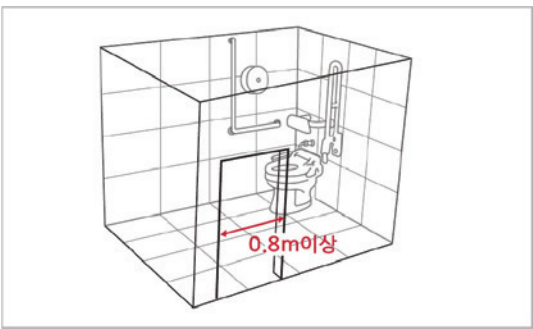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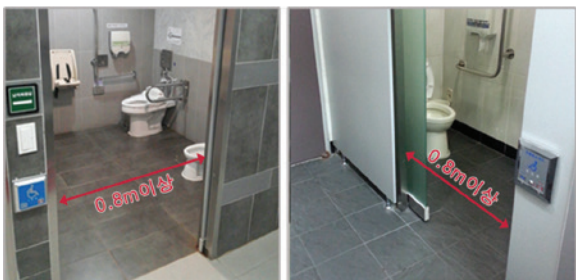
점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휴게시설

비치용품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질문 사항	11-3.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6m X 깊이 2.0m 이상입니까? [2018. 8. 10. 이후]	적용여부		
		설치 ☐ 폭 1.6m X 깊이 2.0m 이상	미흡 ☐ 폭 1.6m X 깊이 2.0m 미만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대변기 유효 바닥면적이 1.6m X 깊이 2.0m 이상인 사례 사진		
질문 사항	12.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 휠체어의 측면 접근을 위하여 0.75m 이상 활동공간을 확보하였습니까?	적용여부		
		☐ 0.75m 이상	☐ 0.75m 미만	☐ 미설치
상세 이미지		 대변기 측면에 휠체어의 측면 접근을 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13-1. 대변기 칸막이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을 0.8m 이상 확보하였습니까? [2018. 8. 9. 이전]	적용여부		
		☐ 0.8m 이상	☐ 0.8m 미만	☐ 미설치
상세 이미지		 대변기 칸막이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이 0.8m 이상인 사례 사진		

편의시설 자가진단 [그 밖의 시설]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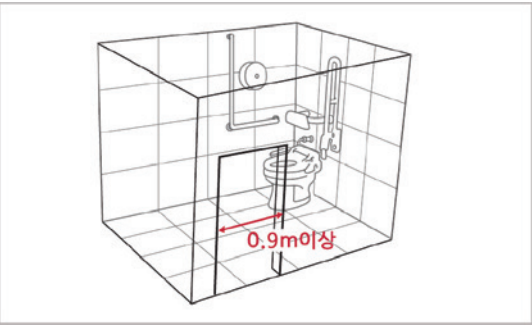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휴게시설

비치용품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질문 사항	13-2. 대변기 칸막이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을 0.9m이상 확보 하였습니까? [2018. 8. 10. 이후]	적용여부		
		설치 ☐ 0.9m이상	미흡 ☐ 0.9m미만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대변기 칸막이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이 0.9m이상인 사례 사진		
질문 사항	14. 대변기 칸막이 출입문의 형태가 미닫이문, 접이문, 밖여닫이 문을 설치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미닫이문, 접이문, 밖여닫이문	미흡 ☐ 주름문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 미닫이문(설치) 자동문 · 접이문 (설치) · 밖여닫이문 (설치) · 안여닫이문(미설치) 주름문	 대변기 칸막이 출입문이 자동문으로 설치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15. 대변기의 양옆에 수평손잡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6m이상, 0.7m이하의 높이에 설치되어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0.6m이상 ~ 0.7m이하	미흡 ☐ 기준 초과, 미만 설치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대변기 양옆 0.6m~0.7m 높이에 수평손잡이를 설치한 사례 사진		

편의시설 자가진단 [그 밖의 시설]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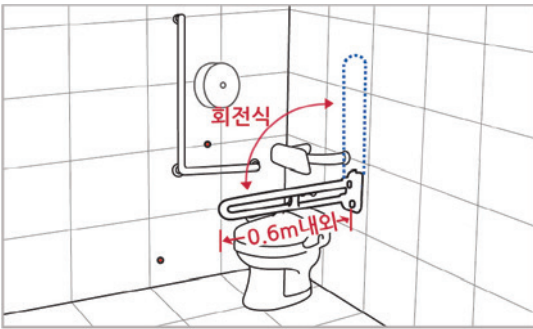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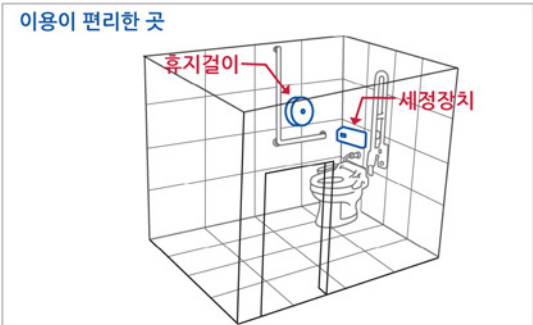
점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휴게시설

비치용품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질문 사항	16. 벽측 수평손잡이는 변기 중심에서 0.4m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0.4m이내	미흡 ☐ 0.75m미만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양옆 수평손잡이의 간격을 0.7m 내외로 할 수 있습니다.	 벽측 수평손잡이를 변기 중심에서 0.4m이내의 지점에 설치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17. 다른쪽 수평손잡이는 0.6m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회전식 손잡이	미흡 ☐ 고정식 손잡이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0.6m내외의 길이의 회전식 수평손잡이를 설치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18. 화장실의 세정장치·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기준적용	미흡 ☐ 미흡설치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이용이 편리한 곳 	 세정장치, 휴지걸이를 규정보로 설치한 사례 사진		

편의시설 자가진단 [그 밖의 시설]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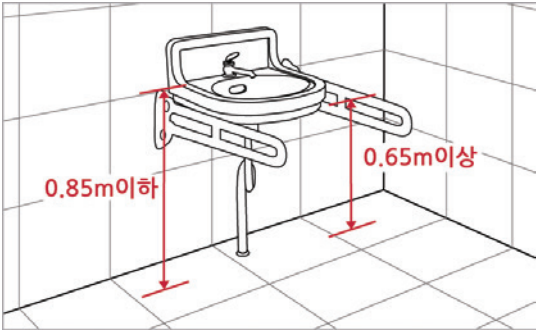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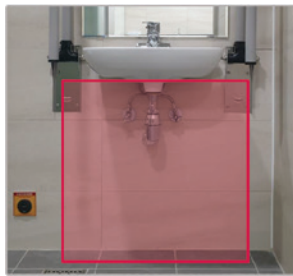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휴게시설

비치용품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질문 사항	19. 세면대의 상단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85m이하, 하단 높이는 0.65m이상으로 설치되어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상단높이 0.85m이하, 하단높이 0.65m이상	미흡 ☐ 기준 초과, 미만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상단높이가 0.85m, 하단높이가 0.65m이상 설치된 세면대 사례 사진
질문 사항	20.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발판 들어갈 수 있는 형태	미흡 ☐ 발판 들어갈 수 없는 형태	미설치 ☐ 발판 들어갈 수 없는 형태
상세 이미지				세면대 하부에 무릎 및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형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21. 수도꼭지 냉·온수의 구분이 점자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냉·온수 구분 점자표시	미흡 ☐ 미흡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수도꼭지의 냉·온수 구분이 점자로 되어있는 사례 사진

편의시설 자가진단 [그 밖의 시설]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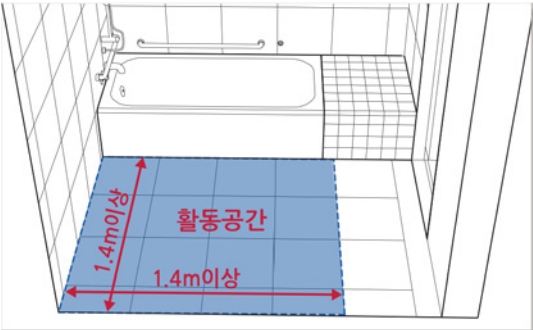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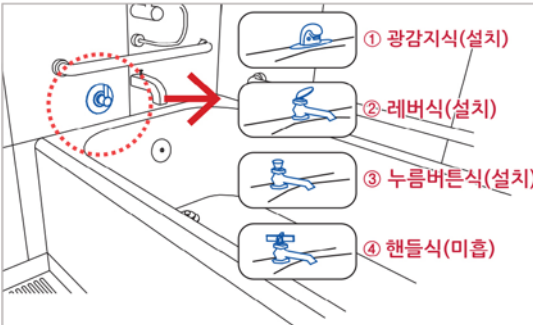
점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휴게시설

비치용품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질문 사항	22. 욕조의 전면에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 (1.4mX1.4m)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1.4mX1.4m이상	☐ 1.4mX1.4m미만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욕실 접근 통로의 유효폭이 1.4m이상인 사례 사진		
질문 사항	23.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이상 0.45m이하입니까?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0.4m~0.45m사이	☐ 기준 초과, 미만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욕조의 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4m이상, 0.45m이하인 사례 사진		
질문 사항	24. 욕조의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수도꼭지 사용이 쉬운 형태(①, ②, ③)	☐ 수도꼭지 사용이 어려운 형태(④)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사용하기 쉬운 형태의 수도꼭지 사례 사진		

편의시설 자가진단 [그 밖의 시설]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휴게시설

비치용품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질문 사항	25.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미흡	미설치 ☐ 손이 도달하기 어려운 위치에 설치
상세 이미지				사용하기 쉬운 형태의 샤워기 사례 사진
질문 사항	26.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비상용 벨을 설치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손이 닿는 위치에 비상용 벨 설치	미흡 ☐ 손이 닿지 않는 위치에 비상용 벨 설치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비상용 벨 설치 사례 사진
질문 사항	27.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1.2m 이하로 설치되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0.8m~1.2m 사이	미흡	미설치 ☐ 기준 초과, 미만
상세 이미지				객실 내 스위치, 콘센트 및 수납선반의 높이 적정함 사례 사진

편의시설 자가진단 [그 밖의 시설]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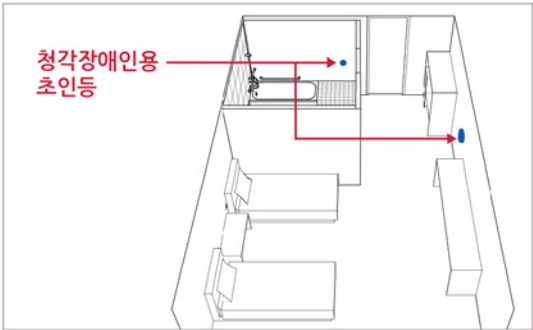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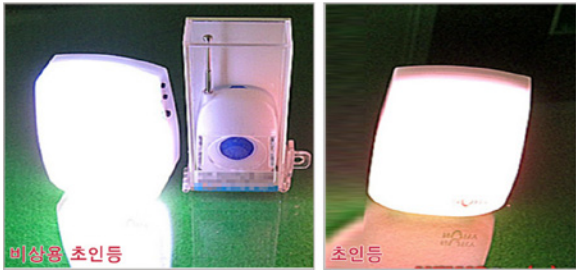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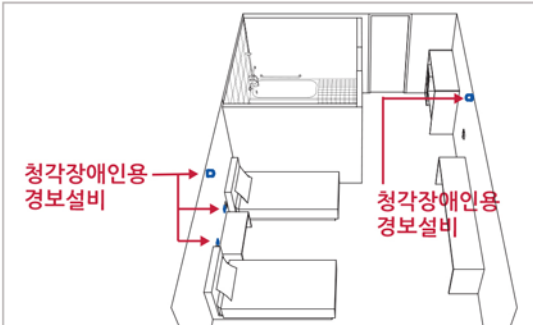
점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휴게시설

비치용품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질문 사항	28. 객실 또는 침실의 화장실 및 욕실에 초인종과 함께 청각장애인용 초인등을 설치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초인종, 초인등	미흡 ☐ 초인종, 초인등 중 1개 설치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청각장애인용 초인등	 비상용 초인등 및 청각장애인용 초인등 설치 사례 사진		
질문 사항	29. 객실 또는 침실에 건축물전체의 비상경보시스템과 연결된 청각장애인용 경보설비를 설치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청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미흡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청각장애인용 경보설비	 청각장애인용 경보설비 청각장애인 호출벨 건축물 전체의 비상경보시스템 연동 사례 사진		

편의시설 자가진단 [그 밖의 시설]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휴게시설

비치용품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질문 사항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을 출입구 및 피난 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연속설치	미흡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휠체어사용자 관람석 사례 사진		
질문 사항	2.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을 1석당 폭 0.9m이상×깊이1.3m이상 확보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폭0.9m이상× 깊이1.3m이상	미흡 ☐ 기준미흡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휠체어관람석 공간확보 사례 사진		
질문 사항	3.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을 동행인이 함께 앉을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설치	미흡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휠체어관람석에 동행인이 함께 앉을 수 있는 좌석 설치 사례 사진		

편의시설 자가진단 [그 밖의 시설]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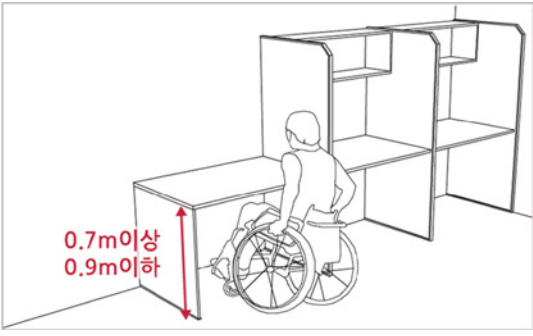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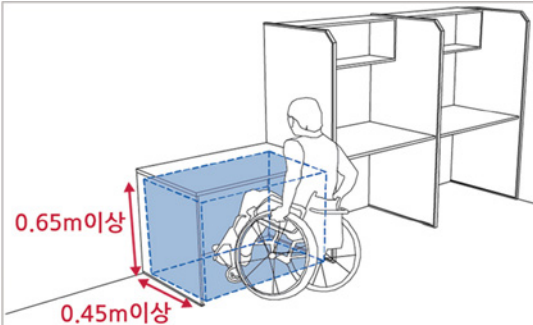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휴게시설

비치용품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질문 사항	4. 열람석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m이상 0.9m 이하로 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0.7m~0.9m사이	☐ 기준 초과, 미만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열람석 상단 높이 적정함 사례 사진
질문 사항	5. 열람석의 하부에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 기준미흡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열람석 하부 공간확보 사례 사진

편의시설 자가진단 [그 밖의 시설]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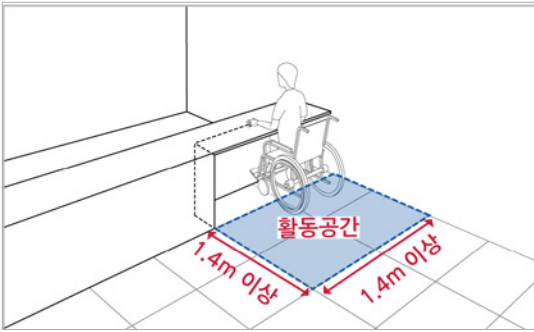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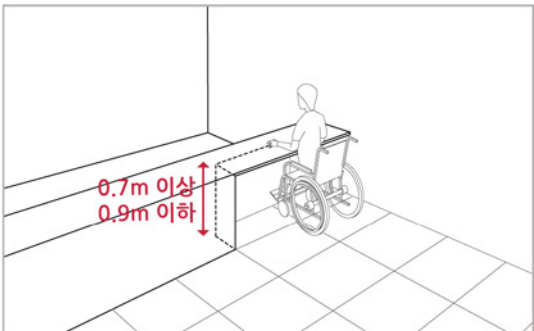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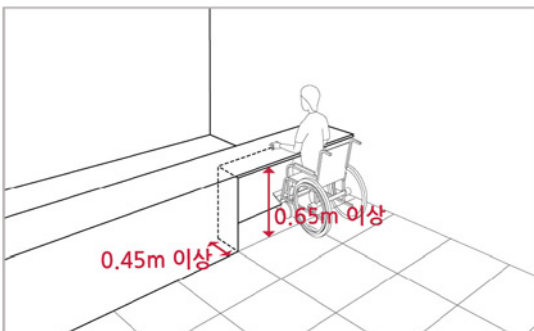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휴게시설

비치용품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질문 사항	1.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전면에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이 확보되어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활동공간 확보 (1.4mX1.4m 이상)	미흡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접수대 전면에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2. 접수대 또는 작업대 상단까지의 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7m 이상, 0.9m 이하입니까?	적용여부		
		설치 ☐ 0.7m 이상 ~0.9m 이하	미흡 ☐ 기준 초과, 미만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접수대 상단 높이가 0.7m 이상, 0.9m 이하인 사례 사진		
질문 사항	3.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하부에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 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어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	미흡 ☐ 높이 0.65m 미만 깊이 0.45m 미만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접수대 하부에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 공간을 확보한 사례 사진		

편의시설 자가진단 [그 밖의 시설]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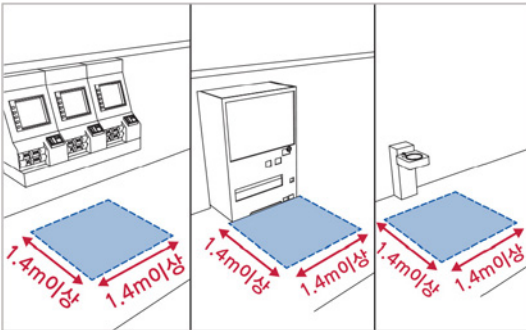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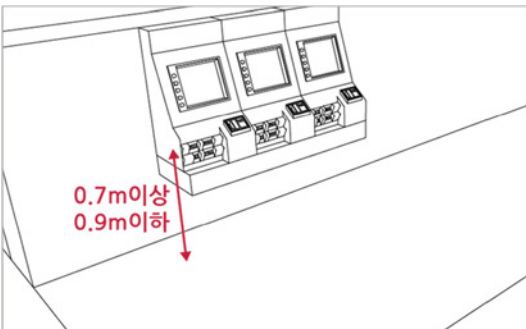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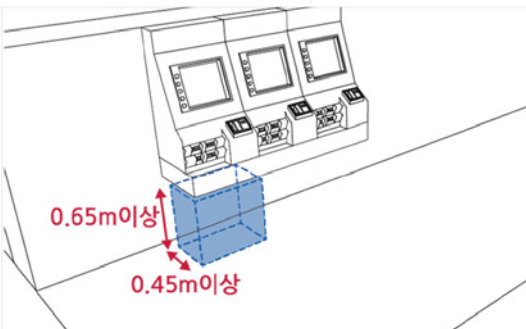
점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휴게시설

비치용품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질문 사항	1.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의 전면에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활동공간 확보 (1.4mX1.4m 이상)	미흡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전면 휠체어 활동공간을 확보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2. 매표소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m 이상, 0.9m 이하입니까?	적용여부		
		☐ 0.7m~0.9m 사이	☐ 기준 초과, 미만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장애인 매표소 높이 적정함 사례 사진		
질문 사항	3. 매표소 하부에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적용여부		
		☐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	☐ 기준 미흡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장애인 매표소 하부 공간 확보 사례 사진		

편의시설 자가진단 [그 밖의 시설]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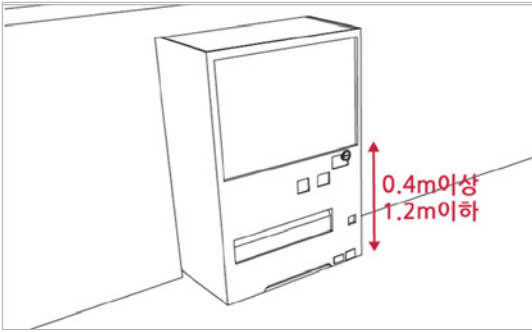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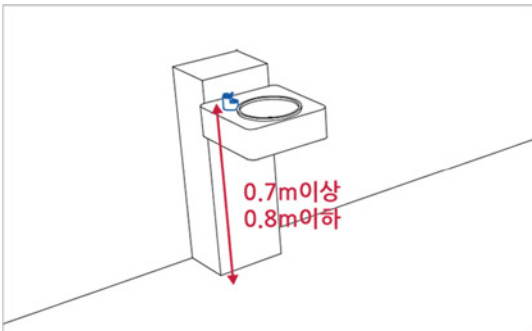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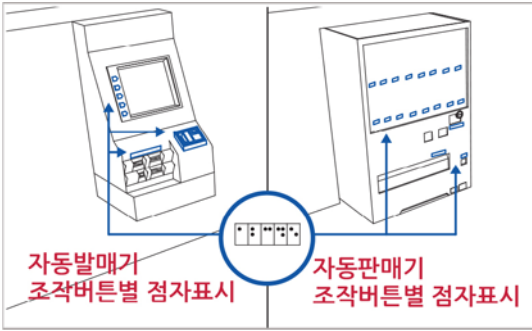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휴게시설

비치용품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질문 사항	4.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발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구의 높이는 0.4m이상, 1.2m이하로 설치되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높이 0.4m ~ 1.2m사이	미흡 ☐ 기준 초과, 미만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자동판매기 동전투입구, 조작버튼, 상품출구 높이 적정함 사례 사진		
질문 사항	5. 음료대의 분출구의 높이는 0.7m이상 0.8m이하로 설치되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높이 0.7m ~ 0.8m사이	미흡 ☐ 기준 초과, 미만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음료대 분출구 높이 적정함 사례 사진		
질문 사항	6.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조작버튼은 점자표시가 되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점자표시	미흡 ☐ 기준 초과, 미만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자동발매기 조작버튼별 점자표시 자동판매기 조작버튼별 점자표시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 조작버튼 점자표시 사례 사진		

편의시설 자가진단 [그 밖의 시설]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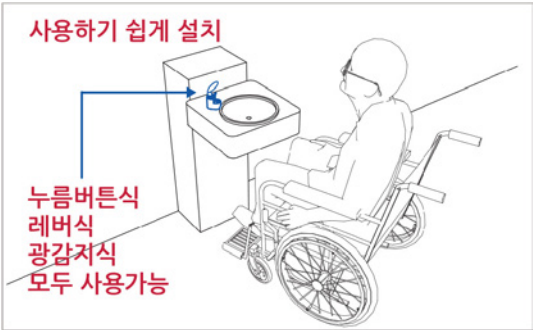
점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휴게시설

비치용품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질문 사항	7. 음료대의 조작기는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되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조작하기 쉬운 형태 (①, ②, ③)	미흡 ☐ 조작하기 쉬운 형태 (④)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음료대 조작기 사례 사진		
질문 사항	8.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이나 시각 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는 바닥재를 달리하여 설치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규정에 맞춤	미흡 ☐ 규정에 미흡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매표소, 자동발매기 전면 점형블록 설치 사례 사진		

편의시설 자가진단 [그 밖의 시설]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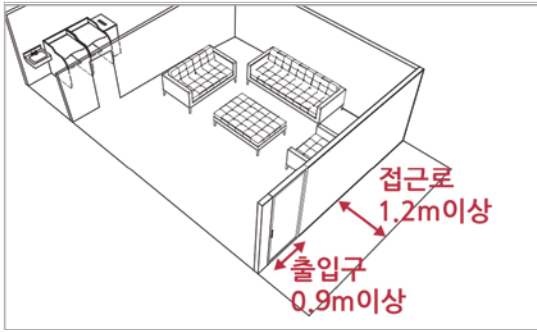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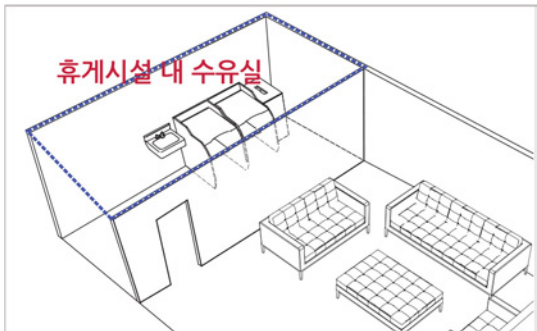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휴게시설

비치용품

·임산부 등의 이용이 가능한 휴게시설

질문 사항	1.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이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연속설치	미흡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임산부 휴게시설 휠체어 및 유모차 접근 가능 공간 확보 사례 사진		
질문 사항	2.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 수유실이 별도로 설치되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수유실	미흡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내 별도 수유실 설치 사례 사진		
질문 사항	3. 수유실에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가 설치되었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미흡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수유실에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 설비 설치 사례 사진		

편의시설 자가진단 [그 밖의 시설]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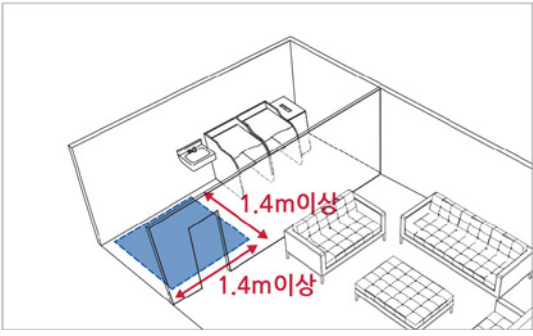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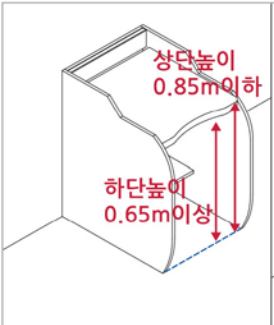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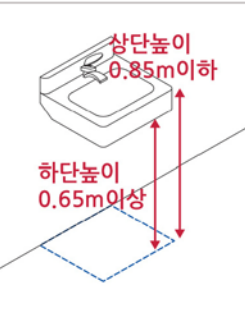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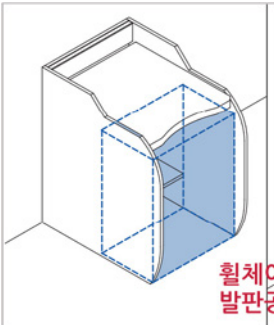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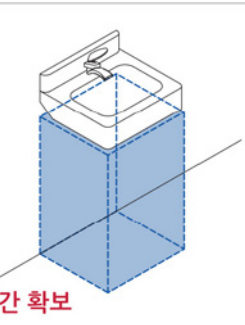
점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휴게시설

비치용품

• 임산부 등의 이용이 가능한 휴게시설

질문 사항	4.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기능하도록 가로 1.4m, 세로 1.4m의 공간을 확보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1.4mX1.4m이상	미흡 ☐ 1.4mX1.4m미만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 전면 공간 확보 사례 사진		
질문 사항	5.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 부터 0.85m이하, 하단 높이는 0.65m이상으로 설치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상단0.85m이하 하단0.65m이상	미흡 ☐ 기준 초과, 미만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 높이의 적정함 사례 사진		
질문 사항	6.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하부에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였습니까?	적용여부		
		설치 ☐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형태	미흡 ☐ 발판이 들어갈 수 없는 형태	미설치 ☐ 발판이 들어갈 수 없는 형태
상세 이미지	  휠체어 발판공간 확보	 기저귀교환대 하부 공간 확보 세면대 하부 공간 확보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 하부 공간 확보 사례 사진		

편의시설 자가진단 [그 밖의 시설]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휴게시설

비치용품

• 휠체어 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

질문 사항	1.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가 출입구 부근, 민원실,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되어있습니까? (읍면 · 동사무소에 한함)	적용여부		
		설치 ☐ 모두 비치됨	미흡 ☐ 일부 비치됨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확대경, 점자업무안내책자를 비치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2.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가 출입구 부근, 민원실,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되어있습니까? (우체국, 전신전화국에 한함)	적용여부		
		설치 ☐ 모두 비치됨	미흡 ☐ 일부 비치됨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확대경, 팩스기를 비치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3. 보청기기가 출입구 부근, 민원실,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되어있습니까? (공공도서관, 공연장, 관람장에 한함)	적용여부		
		설치 ☐ 모두 비치됨	미흡 ☐ 일부 비치됨	미설치 ☐ 미설치
상세 이미지		청각장애인을 위한 청취기기를 비치한 사례 사진		

편의시설 자가진단 [그 밖의 시설]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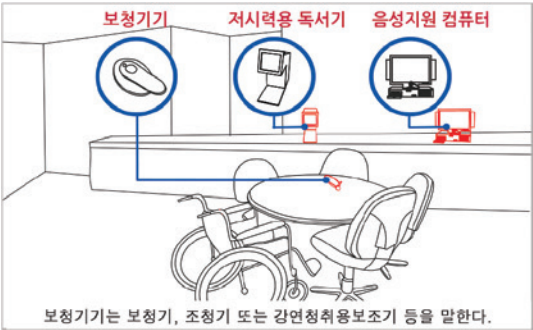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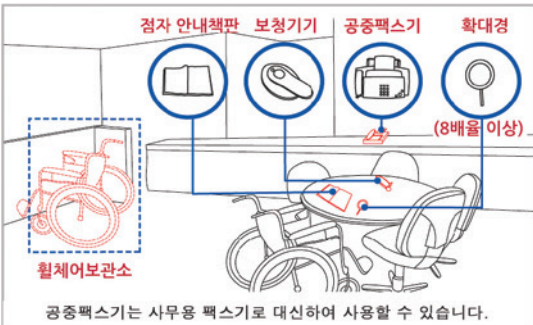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휴게시설

비치용품

• 휠체어 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

질문 사항	4. 저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 컴퓨터 및 보청기기가 출입구 부근, 민원실,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도서관에 한함)	적응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모두 비치됨	☐ 일부 비치됨	☐ 미설치
상세 이미지	 보청기기는 보청기, 조청기 또는 강연청취용보조기 등을 말한다.	  음성지원 컴퓨터, 저시력용 독서기를 비치한 사례 사진		
질문 사항	5. 점자업무안내책자시 · 군 · 구청에 한함, 휠체어,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및 보청기기가 출입구 부근, 민원실,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로서 제1종근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적응여부		
		설치	미흡	미설치
		☐ 모두 비치됨	☐ 일부 비치됨	☐ 미설치
상세 이미지	 휠체어보관소 공중팩스기는 사무용 팩스기로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대경, 휠체어를 비치한 사례 사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한

더 편한ilter 편의시설 자가진단지

인 쇄 2025년 12월

발 행 2025년 12월

발 행 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3619)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59(구미동)

대표번호 031-728-7001~3

홈페이지 <http://www.kead.or.kr>

I S B N 979-11-6922-068-2(93330)
